선	기관의 장
<u>.</u>	
람	

all ways INCHEON

제1769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7	칙															
○ 인	천굉	남역시교	<u>.</u> 육	규칙 기	제676	5호 인	천광역	시학교	환경위	냉정화-	구역점검등	·에관한	·규칙	전부개 [:]	정규칙	•••••	3
	_																
1	훈	령															
○ 인	천굉	'역시훈	령	제11	97호	인천공	방역시	종합상	황실 설	치 및	운영에 관	한 규	정 전투	대정규	ŀ정 ·····	••••••	10
		11															
-	<u>''</u>	시															
○ 인	천굉	¦역시고	ᆚ시	제20	19-26	58호 5	E시관리	계획(5	E시계호	시설: 기	전기공급설	비) 결	정(변경) 및 ㅈ	형도민	변 고시 …	29
○ 인	천굉	'역시고	ᆚ시	제20	19-27	70호 7	양구	산림욕	장 조성	계획(변경) 승인	고시	•••••	••••••	•••••	•••••	31
○ 인	천굉	:역시고	ᆚ시	제20	19-28	82호 홍	상청하도	지구	수리시 [.]	설개보	수사업 시험	행계획	승인·	•••••	•••••	••••••	34
○ 인	천굉	'역시고	ᆚ시	제20	19-28	83호 I.	Food	Park 산	<u>·</u> 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	형도면	고시ㆍ	•••••	••••••	36
ㅇ 인	천굉)역시고	ᆚ시	제20	19-28	84호 남	남동국기	 산업 [···기 재·	생사업	지구 지정	및 지	형도면	정정	고시 "	•••••	48
ㅇ 인	천굉	:역시고	ᆚ시	제20	19-28	86호 5	E시계획	시설(논현중영	앙근린	공원) 사업	실시기	ᅨ획인기	가 고시	•••••	••••••	50
○ 인	천굉	:역시고	ᆚ시	제20	19-28	87호 연	<u> </u> 천도시	관리계	획(관교	근린공	원) 결정(변	경) 및	지형도	면 고시		••••••	53
			_														
-	공	고															
ㅇ 인	천굉	: 역시공	라고	제20	19-1	564호	건축물	미술작	품 설치	계획	심의결과 "	••••••	•••••	•••••	•••••	••••••	64
ㅇ 인	천굉	: 역시공	라고	제20	19-1	566호	기부금	품 모집	김 등록	공고ㆍ	•••••	•••••	•••••	•••••	•••••	••••••	66
ㅇ 인	천굉) 역시공	라고	제20	19-1	568호	재단법	인 이0	비이에이	에프피	l 설립허기	ㅏ 공고	•••••	•••••	•••••	••••••	67
ㅇ 인	천굉) 역시공	라고	제20	19-1	570호	측정대	행업 등	동록말소	공고	(그린환경화	화학) ···	•••••	•••••	•••••	•••••	68
ㅇ 인	천굉	'역시공	¦고	제20	19-1!	571호	비영리	민간단	체 등록	릒변경	공고	••••••	•••••	•••••	•••••	••••••	69
ㅇ 인	천굉	'역시공	·고	제20	19-1!	575호	도시철	도 건설	설·운영/	나업계획	획(변경) 공	·람·공	Z	•••••	•••••	••••••	70
ㅇ 인	천굉	'역시공	¦고	제20	19-1!	576호	부동산	개발업	등록	공고 …	•••••		•••••	•••••	•••••	••••••	87
ㅇ 인	천굉	'역시공	¦고	제20	19-1	577호	환경전	문공사	업 신규	구등록	공고(다원이	기앤지))		••••••	•••••	88
○ 인	천굉	: 역시공	고	제20	19-1!	578호	환경전	문공사	업 신규	·등록	공고[에코여	게너지	(주)] ····	•••••	•••••	••••••	89
			<u> </u>	Т	I						1						
호 림												2	인	<u></u>	मुष्	^F	1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80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81호 공인 등록 공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84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8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90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9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29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영화
$_{\circ}$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259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_{\circ}$ 공시송달 공고
예 규
 ○ 인천광역시예규 제468호 인천광역시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0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₁₁ ○ 입법예고
$_{\circ}$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1호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_{12}^{\circ}$ 조례(안) 입법예고 $_{\circ}$
\circ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f 2019-62$ 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f 12
\circ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9-63$ 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cdots 1 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4호 가칭)인천광역시 혁신육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규 칙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기존「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사항이「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2016. 2. 3.)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16.2.3.제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 → 「인천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시기를 규정함. (안 제2조)
-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학교장)의 임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자(교육장)의 임무를 규정함. (안 제4조)

4. 전부개정규칙 : 붙임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9월 5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76호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교육장 : 연 1회 이상

나. 학교장 : 반기별 1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학교장의 임무) ① 학교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장의 임무) ①교육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적발 보고서

(기 관 명)

우○○○-○○○ 주소 / 전화() - / 전송() -								
	(부서명) (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 시행일자 :							
		○교유자		비	시	Q		
			역 내 금지행					
<u> </u>	寸・ 単 寸 そ	1/9 도 고 1	ㅋ 네 ㅁ시%	기 중 기결	격일보고^	I		
번호	행위 및	업주명	소 재 지	학교와의	거리(m)	- 교육환경 저해내용	비고	
	시설(상호)	пто		출입문 경계선				
【기티	-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1	②행위 및			개기 의귀시 옷	④학교와의	비 거리(m)	⑤해제	⑥적·부		
번호	시설(상호)	д г о		면적(m²)	출입문	경계선	년월일	적법	불법	

※ 작성요령

- ① 번호 :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② 행위 및 시설(상호) : 업종 등을 기재하고, 상호는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위치 및 면적 : 건물의 경우 층수 및 면적(㎡)등을 기재한다.
- ④ 학교와의 거리 : 출입문(경계선)과 금지행위 및 시설과의 거리(최단 수평거리)를 기재한다.
- ⑤ 해제 연월일 :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 후 해당되는 경우 기재한다.
- ⑥ 적·부 : 적법(해제) 또는 불법 해당란에 ○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조치결과 보고서

				(७) व	만 명)		
) - (담당자 이름	/ 전송() - [)	
문서번 시행일							
				지행위 및 ㅅ	발 신:]설 조치결괴	인 보고서	
취그리	업종	시고리	> —il —i	학교와의	거리(m)	- 0 2 2 2 2 1 1 0	→ ~l-il o
학교명	(상호)	업주병	소재지	출입문	경계선	- 교육환경 저해내용	<i>소</i> 지내용
【カドス		<u> </u>					
17 1913	1. 1. 0	0 1					

훈령

인천광역시훈령(발령)

- □ 제 명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명「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명「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으로 변경
- 나.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 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제2조)
- 라.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 마련(제4조)
- 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거 마련(제7조)
- 바.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기준 마련(제10조)
- 사.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문서 및 장비보안에 관한 규정(제16조)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19년 9월 9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197호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황실에서 각종 재

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전파"란 법 제18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재난정보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고: 법 제20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보고를 말한다.

나. 통보: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상황 종합보고 등에 대한 통보를 말한다.

다. 대응지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에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 조·지원 등 필요한 제반활동의 지시를 말한다.

- 4. "재난·안전관련 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재 난에 관한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 5.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이란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원격지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시스템을 말한다.
- 6. "유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재난·재해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시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 제4조(설치) 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파악,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본부 재난상황과에 상황실을 설치한다.
 - ② 상황실의 운영을 위하여 재난상황과에 재난상황1팀, 재난상황2팀 및 재난상황3팀을 구성한다.
 - ③ 각 재난상황팀장은 상황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의 임무를 담당한다.
- 제5조(임무)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난관련 정보수집, 상황판단, 보고, 전파 및 종합적 상황파악
 - 2. 재난상황의 보고 및 재난수습부서, 상급기관, 유관기관 등에 신속 전파
 - 3. 재난안전관련 시스템 및 CCTV,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 4. 재난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5. 군·구 상황실 근무상황 확인 및 지도
 - 6. 재난·안전관련 시스템(재난관제 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상황전 파 시스템 등) 운영
 - 7.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지원
 - 8. 그 밖에 재난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 제6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재난상황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상황실을 지휘·감독한다.
 - ② 과장은 상황실의 운영실무에 관하여 시민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상황업무 및 복무사항을 관리한다.
- 제7조(재난안전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 ② 각 재난상황팀은 24시간씩 3교대로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팀별 인원은 과장이 과 정원 및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과장은 상황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대 횟수 및 팀별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 ③ 과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명절, 연말연시 등 연휴기간 비상 근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3. 상황근무자가 휴가 또는 교육훈련 중인 경우
 -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실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09:00부터 다음 날 오전 09:00까지로 한다.
 - ② 당일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전에 출근하여 전일 상황실 근무자와 함께 업무를 인계 ·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황

업무 등 주요사항은 기록과 함께 인계 · 인수하여야 한다.

- ③ 과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 또는 행사지원 등의 업무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상황실 근무자는 별표 1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비상소집 등) ①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사전보고 후 재난상황과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 1.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경보 발령이 있을 때
 -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3. 그 밖에 대규모 재난발생이 예측될 경우 등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과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 직원에 게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 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 제10조(보고 및 전파) ① 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상황발생 보고 및 전파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과장 및 본부장 등에게 재난상황 보고를 하고, 수습주관부서 및 유관기관, 관련부서 등에 그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 ② 과장은 시 관련부서에 전파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전파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구에 대응 지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필용한 경우 전화통신문이나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재난상황보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보고 : 매일 1회 작성하는 일일 종합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2. 수시보고 : 재난의 중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긴급한 보고가 필 요할 경우에 하는 보고(별지 제2호서식)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보고의 보고서에는 재난상황을 기재하고, 작성서식 및 내용은 과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의 보고서에는 제목·일시·장소· 원인·피해상황·응급조치 등 수습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이 포함되 어야 한다.
 - ④ 실장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군·구 근무자 확인 및 각종 상황보고의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체계) ① 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는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② 실장은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 유지 및 장비관리

- 제13조(기록 및 관리) ① 실장은 재난상황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유관기관과 구·군 상황실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실장은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상황실 근무자가실제 활용하는 재난상황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장비관리) ① 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 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장비점검) ① 실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 재난안전상황시 스템 및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실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등

제16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제17조(보안관리) ①「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라 상황실의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구역을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 ③ 과장은 상황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상황실의 각종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④ 상황실에는 시설 내부의 안전을 위하여 CCTV, 인터폰 등 보안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보안강화를 위하여 외부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외부방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라 출입자 통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상황실 출입제한) 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 제19조(결원보충)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관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위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훈련) 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근무환경 조성) ① 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 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수칙 (제8조제4항 관련)

상황실 근무자는 각종 재난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상황실 근무자는 지휘계통과 과장 및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 2. 실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과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 재난수습부서에 전파한다.
- 3. 후임근무자는 교대시간 30분전까지 출근, 합동 근무하여야 한다.
- 4.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재난상황 및 모든 운영장 비의 가동 상태에 대한 인계·인수를 정확히 한다.
- 5.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 관제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 영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모니터링, 가동, 운영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 6. 상황실 근무자는 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서는 아니 된다.
- 7.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 8. 상황실 근무자는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출입 허용 시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다.

[별표 2]

재난안전 상황보고 및 전파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 자연재난

구 분	보고 및 전파기준	비고
태 풍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하천범람,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 피해발생	예비 특보
홍수/호우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저지대침수, 고지대 경사지 붕괴 등 피해발생	호우 주의보
강풍/풍랑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저지대침수, 고지대 경사지 붕괴 등 피해발생	
해일/조수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지역별 별도 지정) 이상이 예상될 때. 기타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 설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교통두절, 노후건축물 붕괴 등 위험상황 발생	대설 주의보
지 진	기상청 통보 규모 4.0 이상의 모든 지진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	규모 4.0이상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μ g/m³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경보
폭 염	。 일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한 파	 아침 최저기온이 전일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경보

□ 사회재난

구분	보고 및 전파기준	비고
산불	· 「산림보호법」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산립보호법 (제36조)
화재/붕괴 /폭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감염병	 제1군감염병(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설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4군감염병(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2호 및 제5호)
가축 전염병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문화재	•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수질오염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수도법(제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유·도선	5t 이상의 유선 및 도선이 전도 또는 좌초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유선 및 도선사 업법(제29조제1 항)
인명사고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 5명 이상 사망	
화학사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싱크홀	。폭 1.0m 이상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항공기 사고	• 인명피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	
가스 유출	다량의 가스 유출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고	
기 타	단일 사고 사망 3명 이상(화재 및 교통사고의 경우 5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별지 제1호서식]



의의 대나아저 삿황부기 개나아저사화신

		OFA) politan City	_ :	르르 2019년		00일(() 00:0		4		한강왕결 880~9
	기싱	상황										
-	0											
	0											
-												
				현황								
0	재` 	난발시	∦ ዥ ———	형 별 	1				-11 - 1			
		계		화 재	산 불	: 붕	괴	폭 발	해 난 사 고	지	진 :	기 타
	일계	1	건									
0	메	시지	처리									
		н	충기기		NDMS		-93	F	A X			l m =
	구 	분	합계	중 앙 재대본	행정 안전부	군·구	행정 안전부	소 방 본 부	군·구	해양 경찰	기타	비고
	일일	계										
	집계	접수 발송										
				•								
	주요	재닌	난발상	! 및 조	치상횡	ł						
		난유형	}	주요!	<u></u> 발생사형	}		조	 치상황		1	<u> </u> 비고
				•			_					
				<u> </u>								

<u> 개단규영</u>	구요발생사상	소시강왕	미끄
	1		

	재난안전	예방활동	사항
_			7 N O

부서	제목	예방 활동내용	비고

□ 주요 언론보도 사항

언론사	주요 보도 내용	비고

□ 군·구 재난상황 훈련

훈련명	중구	동구	미추 홀	연수 구	남동 구	부평 구	계양 구	서구	강화	웅진
5분수신										
문자발송										
재난보고										

※ 군·구 재난상황 훈련 조치결과

작 성 방 법

- 1. 일일 재난상황 및 참고자료를 기재하고, 작성서식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 보고내용이 많을 경우 2-3매 이내로 최대한 간략히 작성, 이외의 사항은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보고선: 보고일시: 2019.00.00(요일).00:00
제목 :
제목: □ 일 시: □ 장 소: □ 상황 개요(사고 원인) ○ □ 피해상황 ○ 인명피해: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 응급조치 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공무원:) - 장비: 대()
□ 향후대책 ○ ○

[별지 제3호 서식]

	재닌	안전식	상황실	근무일	.지			결	Ę	ナ 당	과	장
		. 00:0	00 ~	00	:00							
등록번호	재난		-0000	20 년	월	일()	재				
근무자	상황	티자	의 급 성 명									
	0 0	ПО			직	급				성 명		
			상	황근무자	및	점검()	보고	1)사	항			
				점경	넘(보	고)사형	<u></u>					
구	분	1치	(09:00	~18:00)		2차(18	:00~	익일(9:00)	月	고
		받는	사람	이상유	무	받는	-사	람	0).	상유무		
	구											
	구											
미추홀												
연 수												
남 동												
부 평												
계 양												
	구											
강 화												
옹 진	군											
주요인사 및 특이		·) 방문										
지시빔	날은 기	나항										
			7	내난 상황	·접수	· 및 ㅊ	러리	결과	,			
접수일]시		Ž	건	명				;	조 치	내 용	

[별ス	│ 제4호ㅅ]식
_		

	이처과야	1 A I TULL	아저사화	IJᄉĔ	네 저기저	검 관리대징	Ļ
□시스템						<u>ㅁ 단니네</u> 6 [[] 설비(영상회의	_
장비명		수량		모덜	lg -	점검일시	
점검결과	정상	경고	위험(치	:1명)	장애	지연	기타
1. 점검항목	법 내 및 내용 항						
			작 성	방 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시스템 특성에 따라 양식변경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

소 속	신분증번호	직위(급)	성 명	용 건	서 명	출입	일시	인기자인	ні ә
<u> </u>	(생년월일)	TT(1)	0	6 11	^I 8	부터	까지	בי איני	-1 -1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3),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032-509-691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9. 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90-1번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u	도면	J 31 ml	ما تا	,	면적(m²))	최초	비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변경	_	전기공급설비	부평구 갈산동 90-1번지 일원	22,722	감) 14	22,708	경기도고시 제1978-133호 ('78.4.3)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_	전기공급설비	○면적 변경 - 22,722㎡ → 22,708㎡ (감 14㎡)	○ 도시계획시설(전기 공급 설비) 내 미보상된 사유지 제척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70호

계양구 산림욕장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계양구 산림욕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동 시행령 제19조6에 따라 계양구 산림욕장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녹지정책과 ☎032-440-3677), 인천광역시계양구청(공원녹지과 ☎032-450-565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9. 9. 2.

인 천 광 역 시 장

1. 명 칭 : 계양구 산림욕장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산 10번지 일원

3. 면 적 : 53,653 m²

4. 산림욕장 시설계획(변경)조서

계양구 산림욕장 조성계획(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산10번지 일원)

			변	경	전				변	경	产			
=	구 분	ㅂ기대기	시설	건	축	물	고이기	ㅂ기머기	시설	건	축	물	공	비고
		부지면적 (m²)	시설 면적 (m²)	동수 (동)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m²)	시설 면적 (m²)	동수 (동)	바닥 면적 (m²)	연 면적 (m²)	공 작 물 (기)	
Ť	합 계	53,653.0	1,599.8	_	ı	_	5	53,653.0	2,424.0	-	_	_	18	
	시설계	1,599.8	1,599.8				5	2,424.0	2,424.0				18	중824.2㎡ 중13기
	편익시설	417.5	417.5				5	1,501.2	1,501.2				18	중1,083.7㎡ 중13기
시	위생시설	-	-					-	-					
	체험 · 교육 시설	1,182.3	1,182.3					846.8	846.8					감335.5㎡
설	체육시설	-	-					-	-					
	전기 · 통신 시설	-	-					-	-					
	안전시설	-	-					76.0	76.0					중76.0㎡
녹기	지 / 기타	52,053.2						51,229.0						감824.2㎡
시 (법정	시설율(%) (법정60% 이하) 시설율 : 3.0% • 녹지율 : 97.0% 시설율 : 4.5% • 녹지율 : 95.5%													

나. 시설조서

제1769호

				변 경	전						변 경	후				
구	시설명		부지	시설	건	축	물	공		부지	시석	건	축	물	공:	비고
봔	시설당	부호	- 자 면적 (㎡)	연석 (㎡)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공 작 물 (기)	부호	- 전 면적 (㎡)	시설 면적 (㎡)	동수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공 작 물 (기)	01.77
	합 계		53,653.0	1,599.8	_	_	-	5		53,653.0	2,424.0	_	-	_	18	
시	설부지 합계		1,599.8	1,599.8	-	_	ı	5		2,424.0	2,424.0	-	-	_	18	증824.2㎡ 증13기
	소 계		417.5	417.5	-	-	-	5		1,501.2	1,501.2	-	_	-	18	증1,083.7㎡ 증13기
	출렁다리	가	46.0	46.0					가	46.0	46.0					
	목 교	나	17.0	17.0					나	17.0	17.0					
편	왕벚나무데크	다	321.5	321.5					다-1	313.0	313.0					감8.5㎡
의	무장애 데크로드								다-2	1,060.1	1,060.1					증1,060.1㎡
설	파고라	1	33.0	33.0				1	1	33.0	33.0				1	
	정자								2	32.1	32.1				1	증32.1㎡ 증1기
	의자								3						12	증12기
	연식의자	2						4	4						4	
	소 계		1,182.3	1,182.3	-	_	-	-		846.8	846.8	-	_	-	-	김335.5㎡
	산책로 소계	라	630.8	630.8					라	747.8	747.8					증117.0㎡
	산책로-1	라-1	(91.4)	(91.4)					라-1	(87.1)	(87.1)					(감4.3㎡)
체	산책로-2	라-2	(123.5)	(123.5)					라-2	(148.9)	(148.9)					(증25.4㎡)
· I	산책로-3	라-3	(118.0)	(118.0)					라-3	(161.5)	(161.5)					(증43.5㎡)
교육	산책로-4	라-4	(243.1)	(243.1)					라-4	(281.8)	(281.8)					(증38.7㎡)
시 설	산책로-5	라-5	(54.8)	(54.8)					라-5	(45.5)	(45.5)					(감9.3㎡)
	산책로-6								라-6	(4.7)	(4.7)					(증4.7㎡)
	산책로-7								라-7	(18.3)	(18.3)					(증18.3㎡)
	야외체험 학습원	아	551.5						Oł	99.0	99.0					감452.5㎡
안 전 시	소 계									76.0	76.0	_	_	_	-	증76.0㎡
시설	사방댐								바	76.0	76.0					증76.0㎡
_	독지및기타		52,053.2		녹	지율	97.0)%		51,229.0		녹	지율	95.5	5%	감824.2㎡

5. 시설물종합계획도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계획도와 같음)

6. 연도별 투자계획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투자계획과 같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82호

황청하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황청하도지구 수리시설개보 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9. 4.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 업 명 : 황청하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사업목적 : 노후화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영농편의 제공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송해면 하도리 일원

공종	시행계획수립	비고
수원공	 ○ 황청저수지 - 제당 · 상류사면 보강 (사석보강 H=0.5m, L=307m) · 하류사면 보강 (기울기 1:1.7→1:2 변경) · 제체 누수 보강 (지중연속차수벽+그라우팅, L=297m) - 여수토방수로 · 여수토 확장 재설치 (L=25m) · 방수로·감세공 확장 재설치 (B=5.0~6.0m, H=4.5~7.5m, L=110m) · 가시설 설치 - 취수시설 · 사이펀 설치 (Q=0.23㎡/s) ○ 하도저수지 - 제당 · 제체 누수 보강 (지중연속벽, L=268m) ○ 부대공사: 1식 	

4. 사 업 비: 6,605,000천원

5. 사 업 기 간 : 2019년 ~ 2022년

6.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7.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8.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전화 032-930-2529)

※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83호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I-Food Park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2032-440-4672)과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2032-560-5772)에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9. 9.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가. 명칭: I-Food Park
 - 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 다. 면적: 261,700 m²
-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가. 인천시 관내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 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HACCP 인증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 나. 유통시스템의 혁신과 집적 이익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현호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08번길 17-2(오류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지정 승인일 ~ 2019. 12. 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혼용 (수용+환지)]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계	158,993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152,282	95.8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711	4.2	

- 주1) 도축업(C1011), 곡물도정업(C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0), 위험물품 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 주2)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 지수(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 나. 입주 제한업종: 유치업종 이외의 업종
-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 9. 수용사용할 토자·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① 가구 및 획지결정조서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계획 현황>

구 분	획지수	면적(m²)	비 고
합 계	86	176,699	
산업시설용지	78	158,993	
지원시설용지	6	12,459	
주차장용지	1	1,747	
폐수처리시설용지	1	3,50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획 지	비고		
		[현 겍(Ⅲ)	위 치	면 적(m²)	H 7		
합	계	176,699	_	_			
F	1	7 700	1	3,500	폐수		
D	1	7,709	2	4,209	지원		
			1	2,530			
			2	1,700			
	2				3	1,700	
			4	1,700			
			5	1,700			
A		22,686	6	1,700	산업		
			7	1,700			
			8	4,484			
			9	1,650			
			10	1,650			
			11)	2,172			

- 메미스	-1 7 v) -	mi zi/:		획 지	w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위 치	면 적(m²)	비고
			1	2,108	
A	3	6,324	2	2,108	산업
			3	2,108	
			①-1	2,148	
			1-2	1,832	
			①-3	2,620	
Λ.	4	15.000	2	1,706	21 (4)
A	4	15,020	3	1,650	산업
			4	1,650	
			5	1,700	
			6	1,714	
С			1	1,415	-1.01
В	1		2	1,415	지원
	1		3	2,000	
			4	2,000	
	5	16,672	5	1,842	
A			6	2,000	산업
			7	2,000	
			8	2,000	
			9	2,000	
			1	4,140	산업 지원
			2-1	1,650	
A			2-2	1,650	
		40.000	3	3,300	
	6	19,000	4	3,300	
В			(5)	1,620	
	-		6	1,670	
A			7	1,670	산업
			1	6,711	
			2	3,300	
			3-1	1,650	
			3-2	1,650	
A			4	1,650	산업
	7	26,761	5	1,650	
			6	3,300	
			7	1,650	
			8	1,650	
В			9	1,900	지원
A			10	1,650	산업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²)		획 지	비고
<u> 또한번오</u>	//干원호 	된 색(Ⅲ)	위 치	면 적(m²)	H 12
			1	1,650	
A	8	9,301	2	3,530	산업
A	0	9,301	3	1,820	(건 H
			4	2,301	
В			1	1,900	지원
			2	1,650	
			3	1,650	
			4	1,650	
			5	3,108	
			6	3,300	
			7	3,300	
			8-1	1,650	
	9	34,542	8-2	1,650	
A		04,042	9-1	1,650	산업
			9-2	1,650	
			⑩−1	1,650	
			1 0-2	1,650	
			11)-1	1,554	
			11)-2	1,555	
			12	1,675	
			13	1,650	
			14)	1,650	
Е			1	1,747	주차장
	10	8,294	2	1,675	
A		0,201	3	1,650	산업
			4	3,222	
			1	1,650	
			2	1,650	
			3-1	1,062	
A	11	10,390	3-2	1,061	산업
	11	10,390	<u>4</u> -1	1,062	산 1
			<u>4</u>)-2	1,061	
			5-1	1,422	
			5-2	1,422	

⁻ 산업시설용지(78획지) 158,993m² / 지원시설용지(6획지) 12,459m²

⁻ 주차장용지(1획지) 1,747m² / 폐수처리시설용지(1획지) 3,500m²

② 저류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²)	흭	지	धो त
도번번오 가구번오 	인 석(111)	위치	면적(m³)	비고	
합	계	4,466	-	_	
저	저 1	2,538	1	2,538	
	저 2	1,928	1	1,928	

③ 공동개발 권장 획지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노런 번호	가구인도	년석(111)	위치	면적(m')	nl <u>177</u>
	9	3 400	6	1,700	©, ⑦
	2	2 3,400	7	1,700	공동개발 권장
			①-1	2,148	
	4	6,600	1-2	1,832	①-1, ①-2, ①-3 공동개발 권장
A			①-3	2,620	
	5	4,000	6	2,000	©, ⑦
		4,000	7	2,000	공동개발 권장
	0	1 750	4	1,650	4, 5
	9	4,758	5	3,108	공동개발 권장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①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그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도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1)~(1)	건폐	ll 율	○ 80% 이하
	3-(1)~(3)	용조	를	○ 350% 이하
	4-1)-1~ 5)	노	া	_
	_)~9)~4 ~7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A	7-①	-8,10	쳥	태	○ 경사지붕 권장(평지붕 설치 시 옥상 녹화 조성 권장) ○ 대2-1, 중1-1, 중2-1, 중2-2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A	8-1 9-2		색	채	○지붕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10-0	2~4	건 축	기 정	○ 중1-1, 중2-1, 중2-2호선변: 건축한계선 2m ○ 대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소로1-1호선변 3BL: 건축한계선 1m ○ 산업4BL 4, 5획지: 건축한계선 3m
	11-①) (5) - 2	· 국 선	변 경	○ 중1-1, 중2-1, 중2-2호선변: 건축한계선 2m ○ 대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소로1-1호선변 3BL: 건축한계선 1m ○ 5가구 4, 5획지: 건축한계선 3m
			7]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공장 내 방문객들을 위한 견학코스나 생산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 마련 권장

- 1) 도축업(C1011), 곡물도정업(C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0), 위험물 품 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 2)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지수(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②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여 거	허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다만, 바닥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2천㎡이 상으로서 해당지역 소재공장 또는 중소기업 진홍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①	건피	fl 율	○ 80% 이하
	7-9	용 2	덕률	○ 400% 이하
В	6-5	노	ା	_
	5-2	배	え]	○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 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형	태	 ○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의무화 ○ 중1-1, 중2-1, 중2-2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색	채	○지붕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축	추선	○ 중1-1, 중2-1, 중2-2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7]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산 산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무	허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다만, 바닥면적 2천㎡이만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2천㎡이상으로서 해당지역 소재공장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피	fl 율	○ 80% 이하																		
			적률	○ 400% 이하																		
С	5-①	높 이		_																		
		배	え	○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 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ਲੋ	태	○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의무화 ○ 중1-1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색	채	○지붕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축	축선	○중1-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소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7]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브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도면번호	위	히 구	분	계 획 내 용								
	1-2						상 거	허 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다만, 바닥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2천㎡이 상으로서 해당지역 소재공장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 80% 이하								
		8	적률	○ 350% 이하								
D		1-2	1-2) 높	0]	_						
						태	치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 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색	채	○지붕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축	축선	○대2-1호선변 : 건축한계선 3m								
		7]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③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흰 내 용								
		용 모	청용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만 가능), 운수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 ※ 주차장 외 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30% 미만 								
		-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피	ᆌ율	○ 90% 이하								
		용건	석률	○ 900% 이하								
Е	10-①	높	\circ	_								
		배	치	_								
		형	태	 ⊙ 평지붕 설치 시,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권장 ○ 중1-1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u>정</u>	2								색	채	○지붕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	축	○중1-1호선변 : 건축한계선 2m								
		્રે	<u> </u>	○소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대형차량 주차공간 확보								

④ 오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허 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9조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도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피	ᆌ율	○ 80% 이하
		용조	덕률	○ 350% 이하
		놰	ो	_
F	1-1	배	치	-
		형	태	○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의무화
		색	채	○ 지붕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II 	○ 벽면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축	추선	_
				○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기	타	○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m²)	비고
I-Food Park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261,700	지구단위계획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게재 생략
- 12. 관계도서의 열람
 - 가. 열람방법: 열람장소에서 열람(게재 생략)
 - 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4672)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5772)

다.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84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호(2019. 8. 19.)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누락)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포함)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9.

인 천 광 역 시 장

- ◆ 정정사유 : 허가구역 지정기간 누락분 반영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사항 정정
-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변경없음)
- 3. 재생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변경없음)
-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변경없음)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8.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10.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정정)

(기정)

구분	도면 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m²)		비고
1 1	변호 변호	1 7 7 8	71 /1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_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_	중) 9,504,045.7	9,504,045.7	

(정정)

구분	도면 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m²)		비고
7 &	표기 번호	7 7 7	Π Λ	기정	변경	변경후	1 41 44
신설	_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_	증) 9,504,045.7	9,504,045.7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9. 8. 19.~2020. 8. 18.(1년)
-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변경없음)
- 12. 관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13. 관계도면(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86호

도시계획시설(논현중앙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논현중앙근린공원)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공원녹지과 ☎032-453-614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09. 0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2) 명 칭 : 논현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교양시설 (도서관 증)	유희시설 (놀이시설 증)	휴양시설 (휴게쉼터 증)	편익시설 (주차장 증)	기타 (조경, 운동, 기반)	녹지	비고
조성계획 당초	60,073.5	_	_	_	32.9	12,835.70	47,204.9	
조성계획 변경	60,073.5	1,411.61	344.2	241.5	952.05	9,948.24	47,175.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조세시	시킨	기독	(m²)	(m²)	성명	주소	川工
합 계			60,073.50	60,073.50			_
논현동	611-7	공원	41,789.20	41,789.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5-13	공원	6,698.00	6,698.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4-24	공원	11,586.30	11,58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실시계획인가 조건

-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 4. 사업 착수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 및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5.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비대상 필지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후 사용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 해야 한다.
- 7.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 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 8.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8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관교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관교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북산역사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2032-458-7037), 인천광역시월미공원사업소(서부공원팀 2032-440-595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9. 9. 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관교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동, 문학동 일원

3. 면 적 : 490,513 m²

4. 도시계획시설(관교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도시계획시설(관교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 괄 표(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동, 문학동 일원)

(시설율	:	19.25%,	건폐율	:	0.40%)
------	---	---------	-----	---	--------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증감 (m²)
			(m²)	(m²)	동수(동)	바닥면적(m²)	연면적(m²)	(フ])	(m²)	(m²)	동수(동)	바닥면적(m²)	연면적(m²)	(기)	(111)
	겨]	490,513	94,542	6	1,982	3,462	352	490,513	94,450	6	1,982	3,462	352	
	2	찬 계	94,542	94,542	6	1,982	3,462	352	94,450	94,450	6	1,982	3,462	352	감 92.0㎡
	7]	소 계	25,854	25,854	-	-	_	_	26,210	26,210	_	-	_	-	증 356.0㎡
	반 시	도 로	(19,040)	(19,040)	-	-	_	-	(19,396)	(19,396)	-	-	_	-	증 356.0㎡
고	설	광 장	(6,814)	(6,814)	-	-	_	-	(6,814)	(6,814)	_	-	-	-	
	조:	경시설	1,524	1,524	-	-	-	-	1,524	1,524	-	-	-	-	-
원	휴	양시설	10,824	10,824	-	-	_	-	10,824	10,824	-	-	_	-	-
시	유:	희시설	5,514	5,514	-	-	-	_	5,514	5,514	_	ı	-	-	-
2.3	운	동시설	5,869	5,869	-	-	-	-	5,869	5,869	-	-	-	-	
설	교(양시설	37,249	37,249	2	1,626	3,106	352	37,249	37,249	2	1,626	3,106	352	-
	편(익시설	7,558	7,558	3	206	206	-	7,110	7,110	3	206	206	-	감 448.0㎡
	관i	리시설	150	150	1	150	150	-	150	150	1	150	150	-	-
	7]1	타시설	-	_	-	-	-	-	_	-	-	-	-	-	-
	녹지 기타 <i>/</i>	및 시설	395,971	-	-	-	-	-	396,063	-	-	-	-	-	증 92.0m²
		·	정) 시설율	: 19.27%	녹지율 : 8	30.73% 건폐율	: 0.4%			변경) 시	설율 : 19.2	5% 녹지율 : 8	80.75% 건피	· 기율 : 0.49	6

나. 시 설 조 서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시설명			부지	시설	구	규	건축물	를(m²)	공작물			부지	시설	구	규	건축물	-(m²)	공작물	비고
, ,	720	부호	위치	면적 (m²)	면적 (m²)	_ 조	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	부호	위치	면적 (m²)	면적 (m²)	_ 조	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	,
	합계	-	-	490,513	94,542	-	-	1,982	3,462	352	-	-	490,513	94,450	-	-	1,982	3,462	352	_
	계	-	-	25,854	25,854	-	-	-	_	_	-	-	26,210	26,210	-	-	-	-	-	증 356.0m²
	도로	-	-	19,040	19,040	-	-	-	-	-	-	-	19,396	19,396	-	-	-	-	-	증 356.0m²
	광장	가	-	6,814	6,814	-	-	-	-	-	가	-	6,814	6,814	-	-	-	-	-	-
	광장1	가-1	문학동 220-2	(391)	(391)	-	-	-	-	-	가-1	문학동 220-2	(391)	(391)	-	-	-	-	-	-
기반	광장2	가-2	문학동 산35	(562)	(562)	-	-	-	-	-	가-2	문학동 산35	(562)	(562)	-	-	-	-	-	-
시설	광장3	가-3	관교동 393	(1,066)	(1,066)	-	-	-	-	-	가-3	관교동 393	(1,066)	(1,066)	-	-	-	-	-	-
	광장4	가-4	관교동 산106	-	-	-	-	-	-	-	-	-	-	-	-	-	-	-	-	-
	광장5	가-5	주안동 산68-1	(4,460)	(4,460)	-	-	-	-	-	가-4	주안동 산68-1	(4,460)	(4,460)	-	-	-	-	-	-
	광장6	가-6	관교동 220-2	(140)	(140)	-	-	-	-	-	가-5	관교동 220-2	(140)	(140)	-	-	-	-	-	-
	광장7	-	-	(195)	(195)	-	-	-	-	-	가-6	관교동 220-2	(195)	(195)	-	-	-	-	-	-
	계	-	-	1,524	1,524	-	-	-	-	-	-	-	1,524	1,524	-	-	-	-	-	-
조경	분수대	1)	-	197	197	-	-	-	-	-		-	-	-	-	-	-	-	-	-
시설	분수대1	①-1	주안동 산68-1	(117)	(117)	-	-	-	-	-	1	주안동 산68-1	117	117	-	-	-	-	-	-
	분수대2	①-2	문학동 산54-1	(80)	(80)	-	-	-	-	-	2	문학동 산54-1	80	80	-	-	-	-	-	-

				, 11	7.	1		- -1					111	7			-			
				변 부지	경 시설	}		전	(2)				변 부지		3		후	7 (2)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 구시 - 면적	시설 면적	구	규	건축물	(m)	공작물	부호	위치	- 구 시 면적	시설 면적	구	규	건축물	<u>f(m)</u>	공작물	비고
		一十五		(m²)	(m²)	조	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	一十五	TI^ 	(m²)	(m²)	조	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	
	잔 디 밭	나	관교동 393	1,195	1,195	-	-	_	_	_	나	관교동 393	1,195	1,195	-	_	_	_	_	_
		<u>'</u>				-		_			'		-	<u> </u>		_	_			
조경	정 자	2	-	132	132	-	-		-	-			-	-	-	-		-	-	-
시설	정 자 1	2-1	문학동 산32	(66)	(66)	-	-	-	-	-	3	문학동 산32	66	66	-	-	-	-	-	-
	정 자 2	2-2	주안동 산69-1	(66)	(66)	-	-	-	-	-	4	주안동 산69-1	66	66	-	-	-	-	-	-
	계	-	-	10,824	10,824	-	-	-	-	_	-	-	10,824	10,824	-	-	-	-	-	-
	야유회장	다	-	5,768	5,768	-	-	-	_	-	다	-	5,768	5,768	-	-	-	-	-	-
	야유회장1	다-1	문학동 산37	(1,047)	(1,047)	-	-	-	-	-	다-1	문학동 산37	(1,047)	(1,047)	-	-	-	-	-	-
	야유회장2	다-2	문학동 산37	(2,231)	(2,231)	-	-	-	-	-	다-2	문학동 산37	(2,231)	(2,231)	-	-	-	-	-	-
	야유회장3	다-3	문학동 산54-1	(2,490)	(2,490)	-	-	-	-	-	다-3	문학동 산54-1	(2,490)	(2,490)	-	-	-	-	-	-
	휴 게 소	라	-	5,056	5,056	-	-	-	-	-	라	-	5,056	5,056	-	-	-	-	-	-
휴양 시설	휴 게 소 1	라-1	문학동 산32	(730)	(730)	-	-	-	-	-	라-1	문학동 산32	(730)	(730)	-	-	-	-	-	-
1/12	휴 게 소 2	라-2	문학동 산37-1	(1,265)	(1,265)	-	-	-	_	-	라-2	문학동 산37-1	(1,265)	(1,265)	-	-	-	-	-	-
	휴 게 소 3	라-3	문학동 산37	(623)	(623)	-	-	-	-	-	라-3	문학동 산37	(623)	(623)	-	-	-	-	-	-
	휴 게 소 4	라-4	관교동 산106	(736)	(736)	-	-	-	-	-	라-4	관교동 산106	(736)	(736)	-	-	-	-	-	-
	휴 게 소 5	라-5	주안동	(308)	(308)	-	-	-	-	-	라-5	- 주안동 산63-1	(308)	(308)	-	-	-	-	-	-
	휴 게 소 6	라-6	주안동 산62-6	(234)	(234)	-	-	-	-	-	라-6	주안동 산62-6	(234)	(234)	-	-	-	-	-	-
	휴 게 소 7	라-7	조아 도	(1,160)	(1,160)	-	-	-	-	-	라-7	주안동 산69-3	(1,160)	(1,160)	-	-	-	-	-	-

				변				전					변 변	フラ]		후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무지 면적 (m²)	이 시설 면적 (m²)	구 조	규 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무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 조	규 모	건축물	(m²) 연면적	- 공작물 (기)	비고
	계	-	-	5,514	5,514	-	-	-	-	-	-	-	5,514	5,514	-	-	-	-	-	-
	놀이마당	마	-	4,866	4,866	-	-	-	-	-	마	-	4,866	4,866	-	-	-	-	-	-
유희 시설	놀이마당 1	마-1	문학동 산37	(3,036)	(3,036)	-	-	-	-	-	마-1	문학동 산37	(3,036)	(3,036)	-	-	-	-	-	-
1.5	놀이마당 2	마-2	주안동 산68-1	(1,830)	(1,830)	-	-	-	-	-	마-2	주안동 산68-1	(1,830)	(1,830)	-	-	-	-	-	-
	민속그네	3	문학동 산54-1	648	648	-	-	-	-	-	(5)	문학동 산54-1	648	648	-	-	-	-	-	-
	계	-	-	5,869	5,869	-	-	-	-	-	-	-	5,869	5,869	-	-	-	-	-	-
	통합배드민턴장	바	-	672	672	-	-	-	-	-	바	관교동 454	672	672	-	-	-	-	-	-
	체력단련장	사	-	4,525	4,525	-	-	-	-	-	사	-	4,525	4,525	-	-	_	-	-	-
	체력단련장 1	사-1	관교동 산97-1	(700)	(700)	-	-	-	_	_	사-1	관교동 산97-1	(700)	(700)	-	-	-	-	-	-
	체력단련장 2	사-2	관교동 산97-1	(390)	(390)	-	-	-	-	-	사-2	관교동 산97-1	(390)	(390)	-	-	-	-	-	-
운동	체력단련장 3	사-3	문학동 253	(195)	(195)	-	-	-	-	-	사-3	문학동 253	(195)	(195)	-	-	-	-	-	-
시설	체력단련장 4	사-4	문학동 253	(460)	(460)	-	-	-	-	-	사-4	문학동 253	(460)	(460)	-	-	-	-	-	-
	체력단련장 5	사-5	문학동 252-13	(243)	(243)	-	-	-	-	-	사-5	문학동 252-13	(243)	(243)	-	-	-	-	-	-
	체력단련장 6	사-6	문학동 252-1	(716)	(716)	-	-	-	-	-	사-6	문학동 252-1	(716)	(716)	-	-	-	-	-	-
	체력단련장 7	사-7	문학동 252	(1,385)	(1,385)	-	-	-	-	-	사-7	문학동 252	(1,385)	(1,385)	-	-	-	-	-	-
	체력단련장 8	사-8	문학동 산56-1	(436)	(436)	-	-	-	-	-	사-8	문학동 산56-1	(436)	(436)	-	-	-	-	-	-
	다목적운동장	아	-	672	672	-	-	-	-	-	아	관교동 454	672	672	-	-	-	-	-	

				변 변		9		전					변 변		4		호			
구분	시설명			부지	성 시설	}		거츠무	<u></u> (m²)	7 X L D			부지	시설			거츠므	<u>₹</u> (m²)	공작물	비고
1 12	ਾਦ ਹ	부호	위치	면적 (m²)	면적 (m²)	구조	모	바닥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면적 (m²)	면적 (m²)	구조	모	바닥면적			
	계	1	-	37,249	37,249	-	-	1,626	3,106	352	-	-	37,249	37,249	-	-	1,626	3,106	352	-
	자연학습원	자	문학동 산32	28,770	28,770	-	-	-	-	-	자	문학동 산32	28,770	28,770	-	-	-	-	-	-
	소동물원	차	문학동 산37	2,090	2,090	-	-	-	-	-	차	문학동 산37	2,090	2,090	-	-	-	-	-	-
교양 시설	야외공연장	카	문학동 전220-2	650	650	막구조		-	-	352	카	문학동 전220-2	650	650	막구조		-	-	352	-
	향토역사전시관	1	주안동 산68-1	5,450	5,450	-	2층	1,480	2,960	-	1	주안동 산68-1	5,450	5,450	-	2층	1,480	2,960	-	-
	전통문화체험관	2	문학동 전220	289	289	-	1층	146	146	-	2	문학동 전220	289	289	-	1층	146	146	-	-
	공연소품창고	타	문학동 산39-1	-	-	-	지 하	(104)	(104)	-	타	문학동 산39-1	-	-	-	지 하	(104)	(104)	-	-
	계	-	-	7,558	7,558	-	-	206	206	-	-	-	7,110	7,110	-	-	206	206	-	감 467.0m
	주 차 장	파	-	7,035	7,035	-	-	-	1	-	파	-	6,568	6,568	-	-	-	-	-	감 467.0m
	주 차 장 1	파-1	관교동 454	(6,641)	(6,641)	-	-	-	-	-	파-1	관교동 454	(6,174)	(6,174)	-	-	-	-	-	감 467.0m
편익	주 차 장 2	파-2	문학동 전220-2	(394)	(394)	-	-	-	-	-	파-2	문학동 전220-2	(394)	(394)	-	-	-	-	-	-
시설	화 장 실	3	-	343	343	-	-	126	126	_		1	-	_	-	-	-	1	-	-
	화 장 실1	3-1	문학동 산37-1	(280)	(280)	-	1층	(63)	(63)	-	3	문학동 산37-1	280	280	-	1층	63	63	-	-
	화 장 실2	3-2	관교동 산106	(63)	(63)	-	1층	(63)	(63)	-	4	관교동 산106	63	63	-	1층	63	63	-	-
	휴게음식점	4	주안동 산68-1	80	80	-	1층	80	80	-	5	주안동 산68-1	80	80	-	1층	80	80	-	-

				변	7	3		전					변		경		후			
구분	시설명			부지	시설		규	건축물	₫(m²)	공작물			부지	시설		규	건축물	물(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치	면적 (m²)	면적 (m²)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7])	부호	위치	면적 (m²)	면적 (m²)	구조		닥면적		(7])	
	음 수 장	ōेेेे	-	100	100	-	-	_	_	_	ैंि	-	100	100	_	-	-	-	_	-
	음 수 장 1	ō}-1	문학동 산46	(60)	(60)	-	-	-	-	-	ō}-1	문학동 산46	(60)	(60)	-	-	-	-	-	-
편익 시설	음 수 장 2	하-2	문학동 산46	(20)	(20)	-	-	-	-	-	하-2	문학동 산46	(20)	(20)	-	-	-	-	-	-
	음 수 장 3	ō}-3	관교동 산97-1	(20)	(20)	-	-	-	-	-	하-3	관교동 산97-1	(20)	(20)	-	-	-	-	-	-
	자전거보관대	-	-	-	-	-	-	-	_	-	6	-	19	19	-	-	1	-	-	증 19.0m²
관리	계	-	-	150	150	-	-	150	150	-	-	-	150	150	-	-	150	150	-	-
시설	관리사무소	5	문학동 산68-1	150	150	-	1층	150	150	-	6	문학동 산68-1	150	150	-	1층	150	150	-	-
녹지	계	-	-	395,971	-	-	-	-	_	-	-	-	396,063	-	-	-	-	-	-	증 92.0m²
및 기타	녹 지	-	전 지 역	395,971	-	-	-	-	-	-	-	전 지 역	396,063	-	-	-	-	-	-	⊙ 92.0m²

다. 도 로 조 서

7 H	г ¬	2 W	ul =	폭 원	연 장	면 적	7] 1	7] 73	x 73	nj =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m)	(m)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u>خ</u>	게		7,521	19,040				증 356.0m²
변경		9	-계		7,681	19,396				5 336.0III
기정	소로	3	1	6	560	3,360	진 입 로	북 측 계	광 장 4	⊼ 20 0m²
변경	소로	3	1	6	565	3,390	진 입 로	북 측 계	광 장 4	증 30.0㎡
기정	소로	3	2	6	195	1,170	연 결 로	소 3-1	주 차 장 1	증 18.0㎡
변경	소로	3	2	6	198	1,188	연 결 로	소 3-1	주 차 장 1	5 16.0III
기정	소로	3	3	4	450	1,800	연 결 로	소 3-1	휴 게 소 2	버거어오
변경	소로	3	3	4	450	1,800	연 결 로	소 3-1	휴 게 소 2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4	4	170	680	진 입 로	서 측 계	광 장 4	버거어오
변경	소로	3	4	4	170	680	진 입 로	서 측 계	광 장 4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5	4	225	900	진 입 로	남 측 계	광 장 3	버권어이
변경	소로	3	5	4	225	900	진 입 로	남 측 계	광 장 3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6	4	20	80	진 입 로	동 측 계	광 장 3	버거어오
변경	소로	3	6	4	20	80	진 입 로	동 측 계	광 장 3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7	3	280	840	연 결 로	소 3-5	휴 게 소 2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7	3	280	840	연 결 로	소 3-5	휴 게 소 2	인경화금
기정	소로	3	8	3	100	300	연 결 로	소 3-26	음 수 장 1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8	3	100	300	연 결 로	소 3-26	음 수 장 1	인경화금
기정	소로	3	9	3	65	195	연 결 로	광 장 4	체력단련장 7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9	3	65	195	연 결 로	광 장 4	체력단련장 7	인/0 畝台
기정	소로	3	10	2	630	1,260	진 입 로	서남측계	소 3-10	변경어 O
변경	소로	3	10	2	630	1,260	진 입 로	서남측계	소 3-10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11	4	85	340	연 결 로	광 장 4	휴 게 소 7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1	4	85	340	연 결 로	광 장 4	휴 게 소 7	ប់០សាក
기정	소로	3	12	4	8	32	연 결 로	소 3-11	놀이마당 2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2	4	8	32	연 결 로	소 3-11	놀이마당 2	ប់០សាក
기정	소로	3	13	4	10	40	연 결 로	광 장 4	놀이마당 2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3	4	10	40	연 결 로	광 장 4	놀이마당 2	민(6) 武百
기정	소로	3	14	4	20	80	연 결 로	광 장 4	향토역사전시관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4	4	20	80	연 결 로	광 장 4	향토역사전시관	단정故古
기정	소로	3	15	4	15	60	연 결 로	향토역사전시관	소 3-11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5	4	15	60	연 결 로	향토역사전시관	소 3-11	신'성畝금

7 12	F 7	7,12	v11 =	폭 원	연 장	면 적	-1 1	-1 -1	T T	w) =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m)	(m)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16	4	15	60	연 결 로	향토역사전시관	휴 게 소 7	변경
변경	소로	3	16	4	15	60	연 결 로	향토역사전시관	휴 게 소 7	없음
기정	소로	3	17	1.5	8	12	연 결 로	광 장 2	광 장 2	변경
변경	소로	3	17	1.5	8	12	연 결 로	광 장 2	광 장 1	없음
기정	소로	3	18	2	70	140	연 결 로	광 장 2	소 3-5	변경
변경	소로	3	18	2	70	140	연 결 로	광 장 2	소 3-5	없음
기정	소로	3	19	1.5	54	81	연 결 로	광 장 2	소 3-20	변경
변경	소로	3	19	1.5	54	81	연 결 로	광 장 2	소 3-20	없음
기정	소로	3	20	1.5	109	164	연 결 로	광 장 1	소 3-22	변경
변경	소로	3	20	1.5	109	164	연 결 로	광 장 1	소 3-22	없음
기정	소로	3	21	2	41	82	연 결 로	주 차 장 1	소 3-1	변경
변경	소로	3	21	2	41	82	연 결 로	주 차 장 1	소 3-1	없음
기정	소로	3	22	2	1,110	2,220	연 결 로	소 3-46	소 3-35	변경
변경	소로	3	22	2	1,110	2,220	연 결 로	소 3-46	소 3-35	없음
기정	소로	3	23	1.5	80	120	연 결 로	소 3-22	놀이마당 1	변경
변경	소로	3	23	1.5	80	120	연 결 로	소 3-22	놀이마당 1	없음
기정	소로	3	24	1.5	180	269	연 결 로	광 장 5	소 3-22	변경
변경	소로	3	24	1.5	180	269	연 결 로	광 장 5	소 3-22	없음
기정	소로	3	25	1.5	154	231	연 결 로	소 3-24	소 3-26	변경
변경	소로	3	25	1.5	154	231	연 결 로	소 3-24	소 3-26	없음
기정	소로	3	26	1.5	330	495	진 입 로	남 측 계	소 3-22	변경
변경	소로	3	26	1.5	330	495	진 입 로	남 측 계	소 3-22	없음
기정	소로	3	27	1.5	110	165	연 결 로	소 3-22	야유회장 2	변경
변경	소로	3	27	1.5	110	165	연 결 로	소 3-22	야유회장 2	없음
기정	소로	3	28	1.5	140	210	연 결 로	소 3-22	야유회장 2	변경
변경	소로	3	28	1.5	140	210	연 결 로	소 3-22	야유회장 2	없음
기정	소로	3	29	1.5	36	54	연 결 로	소 3-22	휴 게 소 3	변경
변경	소로	3	29	1.5	36	54	연 결 로	소 3-22	휴 게 소 3	없음
기정	소로	3	30	1.5	24	36	연 결 로	소 3-22	휴 게 소 3	변경
변경	소로	3	30	1.5	24	36	연 결 로	소 3-22	휴 게 소 3	없음
기정	소로	3	31	1.5	166	249	연 결 로	휴 게 소 3	소 3-3	변경
변경	소로	3	31	1.5	166	249	연 결 로	휴 게 소 3	소 3-3	없음
기정	소로	3	32	1.5	60	90	연 결 로	소 3-9	체력단련장 6	변경
변경	소로	3	32	1.5	60	90	연 결 로	소 3-9	체력단련장 6	없음

7.14	F 7	7,12	v11 =	폭 원	연 장	면 적	-1.1	=1 =1	T T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m)	(m)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33	1.5	30	45	연 결 로	체력단련장 6	체력단련장 7	변경
변경	소로	3	33	1.5	30	45	연 결 로	체력단련장 6	체력단련장 7	없음
기정	소로	3	34	1.5	26	39	연 결 로	체력단련장 7	소 3-1	변경
변경	소로	3	34	1.5	26	39	연 결 로	체력단련장 7	소 3-1	없음
기정	소로	3	35	1.5	330	495	연 결 로	소3-36	소 3-32	변경
변경	소로	3	35	1.5	330	495	연 결 로	소3-36	소 3-32	없음
기정	소로	3	36	2	75	150	연 결 로	남 측 계	남 측 계	변경
변경	소로	3	36	2	75	150	연 결 로	남 측 계	남 측 계	없음
기정	소로	3	37	1.5	40	60	연 결 로	소 3-35	소 3-10	변경
변경	소로	3	37	1.5	40	60	연 결 로	소 3-35	소 3-10	없음
기정	소로	3	38	1.5	330	495	연 결 로	소 3-10	소 3-4	변경
변경	소로	3	38	1.5	330	495	연 결 로	소 3-10	소 3-4	없음
기정	소로	3	39	1.5	170	255	연 결 로	소 3-1	휴 게 소 5	변경
변경	소로	3	39	1.5	170	255	연 결 로	소 3-1	휴 게 소 5	없음
기정	소로	3	40	1.5	126	189	연 결 로	주 차 장 1	휴 게 소 5	변경
변경	소로	3	40	1.5	126	189	연 결 로	주 차 장 1	휴 게 소 5	없음
기정	소로	3	41	1.5	140	210	연 결 로	소 3-40	휴 게 소 6	변경
변경	소로	3	41	1.5	140	210	연 결 로	소 3-40	휴 게 소 6	없음
기정	소로	3	42	1.5	90	135	연 결 로	휴 게 소 5	휴 게 소 6	변경
변경	소로	3	42	1.5	90	135	연 결 로	휴 게 소 5	휴 게 소 6	없음
기정	소로	3	43	1.5	210	315	연 결 로	소 3-1	소 3-44	변경
변경	소로	3	43	1.5	210	315	연 결 로	소 3-1	소 3-44	없음
기정	소로	3	44	1.5	200	300	연 결 로	체력단련장 1	소 3-3	변경
변경	소로	3	44	1.5	200	300	연 결 로	체력단련장 1	소 3-3	없음
기정	소로	3	45	1.5	20	30	진 입 로	북 동 측 계	체력단련장 1	변경
변경	소로	3	45	1.5	20	30	진 입 로	북 동 측 계	체력단련장 1	없음
기정	소로	3	46	1.5	16	24	진 입 로	북 동 측 계	체력단련장 2	변경
변경	소로	3	46	1.5	16	24	진 입 로	북 동 측 계	체력단련장 2	없음
기정	소로	3	47	2.9	32	90	연 결 로	소 3-49	광 장 5	변경
변경	소로	3	47	2.9	32	90	연 결 로	소 3-49	광 장 5	없음
기정	소로	3	48	12	2	24	연 결 로	주 차 장 2	공연소품창고	변경
변경	소로	3	48	12	2	24	연 결 로	주 차 장 2	공연소품창고	없음
기정	소로	3	49	6.0	14	80	진 입 로	남 측 계	야외공연장	변경
변경	소로	3	49	6.0	14	80	진 입 로	남 측 계	야외공연장	없음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干正	ш о	т.5	신오	(m)	(m)	(m²)	71 5	71 省	ਰ <i>ਹ</i>	미끄	
기정	소로	3	50	1.5	23	35	연 결 로	전통문화체험관	야외공연장	변경	
변경	소로	3	50	1.5	23	35	연 결 로	전통문화체험관	야외공연장	없음	
기정	소로	3	51	2	86	172	연 결 로	주 차 장 1	다목적운동장	감 4.0m²	
변경	소로	3	51	2	84	168	연 결 로	주 차 장 1	다목적운동장	- 4.0III	
기정	소로	3	52	2	41	82	연 결 로	소 3-2	다목적운동장	변경	
변경	소로	3	52	2	41	82	연 결 로	소 3-2	다목적운동장	없음	
신설	소로	3	53	2	45	90	연 결 로	소 3-1	소 3-2	증 90.0m²	
신설	소로	3	54	2	111	222	연 결 로	주 차 장 1	소 3-21	증 222.0m²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64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7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 8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9. 8. 27.(화) 14:00

나.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12작품

라. 심의결과

○ 가결 : 12작품(조건부 2작품 포함)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9년도	E 저	7大	건축물미	술직	남품	심의결과
이러 미 키므머	ਨੀ ਸੀ	ス 已	7). 포 rd	심의	결과	ul –
위치 및 건물명	연민	종류	작 품 명	가결	부결	비고
	1	조각	space in space	0		[권고사항] LED조명 장기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설치
1. 서구 청라동 6-3	2	조각	welcome-start	0		
	3	조각	contact-울림	0		
2. 서구 불로동 803-1~4번지	4	조각	숨결(Respiration)	0		[권고사항] 작품 주변 수목 식재로 접근 하지 못하게 유도 필요
3. 계양구 경명대로 1045번길 31	5	조각	Grow up dreaming	0		
4. 중구 신흥동 1가 34-49	6	조각	봄의 소리	0		
5 연수구 송도동 8-21번지 외 1필지	7	조각	시간,공간-현대인	0		
	8	조각	프레쉬박스 (Fresh Box)	0		
6. 남동구 남촌동	9	조각	Forest – 힐링가든	0		
1177-1번지	10	조각	피어라 생명! (Broom Life)	0		
	11	부조	풍요-대지의 노래	0		
7. 부평구 부평동 568-5번지 외 5필지	12	부조	My art story-ing	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6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인천광역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모집자	소 재 지	모 집 목 적	모 집 목표액	모집	모집기간
번호	포함시	포 제 시	五百千年	(백만원)	지역	사용기간
2019-8	(재) 드림파크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50	전국	모집승인일 ~ 2019. 12. 31
2013 0	문화재단	거월로 61	야생화단지 공원조성	30		2020. 1. 1. 2020. 12. 31.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실 (☎032-440-33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68호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주된 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2019 – 1	(재)이에이에이 에프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본동 3층(송도동)	이 윤경	 ○ 이동성 물새 및 서식지 보호 사업 ○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철새 및 서식지보호 사업 지원 ○ 관련 기금조성 	환경정책과	신규

2019. 9. 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7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9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1) 업 체 명: 그린환경화학

2) 대 표 자 : 송재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2(논현동, 3층)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4호

6) 등록연월일 : 1996. 5. 3.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9.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7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 부서
2000-0- 인천광역시-128호	(사)인천옹진군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 (신흥동3가)	장성호	2019. 9. 4.	대표자 변경	공동체 협치담 당관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75호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 공람·공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0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계획 개요

가. 도시철도 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노 선 명	기 · 종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고
서울도시철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부평구청역(서울도시철도7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	~ 마장사거리 ~ 213역(인천	7호선 석남연장선
석남연장선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시철도 2호선)	시업계획(변경) 승인신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철도 건설사업
- (2) 명칭: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1) 시 행 자: 인천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 (2)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일
 - (1) 착수(토목) 일: 2014. 09. 30.
 - (2) 준공(토목) 일: 2020. 10. 31.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변경 있음(붙임 편입용지 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 바. 관련도서: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 2.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3.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032-451-280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2)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032-560-5903)
- 4. 기타사항: 건설·운영사업계획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보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노선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도시철도2호선 박촌 기 인천도시철도1호선 프장 아시아게임 계산 계양(C 주경기장 2공구 경인교대입구 라지구 가정지구 187 3공구 루원시티 속의선학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부평구청 석남동 원적산터널 북항

제2경인고속도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용현 · 학익구역

인 천 광 역 시

인천

인천대공원

서창지구

서참JCT

간석오거리

예술회관

인천터미널

문학경기장

편입용지 세목조서(취득)-1공구

인천광역시-부평구1/3

이런		기 정				이려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	종류	주 소	성명	변경사유	비고
1	청천동	199-41	도	4,773.6	108.8	1	199-41	도	4,773.6	108.8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1공구
2	청천동	112	도	82,245.9	2,980	2	112	도	82,245.9	2,980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1공구
3	청천동	139	구	7,841.4	3,177	3	139	구	7,841.4	3,177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1공구
1	산곡동	100-38	도	11,283	621	1	100-38	도	11,283	621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1공구
2	산곡동	97-1	도	3,975	922	2	97-1	도	3,975	922	인천광역시	고					변경없음	1공구
3	산곡동	99-36	대	1	1	3	99-36	대	1	1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93 ,501동2202호(경서동,청라에 스케이뷰)	박현양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 은행	변경없음	1공구
4	산곡동	99-35	도	27	27	4	99-35	도	27	27	기획재정부	국					변경없음	1공구
5	산곡동	406-8	도	201	201	5	406-8	도	201	201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공구
6	산곡동	96-39	대	11	11	6	96-39	대	11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변경없음	1공구
7	산곡동	96-34	대	18	18	7	96-34	대	18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변경없음	1공구
8	산곡동	96-35	대	1	1	8	96-35	대	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변경없음	1공구
9	산곡동	91-91	대	15	15	9	91-91	대	15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변경없음	1공구

편입용지 세목조서(취득)-1공구

인천광역시-부평구2/3

																	1광역시-두	0 1 2/0
이러		기 정				0134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	종류	주 소	성명	변경사유	비고
10	산곡동	91-92	대	44	44	10	91-92	대	44	4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변경없음	1공구
11	산곡동	96-37	대	2	2	11	96-37	대	2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변경없음	1공구
12	산곡동	96-38	대	2	2	12	96-38	대	2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변경없음	1공구
13	산곡동	96-2	도	1,116	174	13	96-2	도	1,116	174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1공구
14	산곡동	96-33	대	1	1	14	96-33	대	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변경없음	1공구
15	산곡동	7-21	도	6,992	1,535	15	7-21	도	6,992	1,535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1공구
16		10-197	도	7	7	16	10-197	도	7	7	기획재정부	국					변경없음	1공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임미희	2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마트		
17	산곡동	93-17	도	3	3	17	93-17	도	3	3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2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외한 은행	변경없음	1공구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고병묵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마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임미희	2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마트		
18	산곡동	93-18	대	68	68	18	93-18	대	68	68	인천광역시 부평구		,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외한 은행	변경없음	1공구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고병묵	2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마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외한 은행		
19	산곡동	10-196	대	7	7	19	10-196	대	7	7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고병묵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마트	변경없음	1공구
20	산곡동	11-10	대	9	9	20	11-10	대	9	9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임미희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마트	변경없음	1공구

편입용지 세목조서(취득)-1공구

인천광역시-부평구3/3

인려		기 정				인려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	종류	주 소	성명	변경사유	비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임미희	2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마트		
21	산곡동	93-19	대	1	1	21	93-19	대	1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5	2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외한 은행	변경없음	1공구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고병묵	2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마트		
22	산곡동	93-20	전	1	1	22	93-20	전	1	1	부평구	~					변경없음	1공구
23	산곡동	95-29	답	17	17	23	95-29	답	17	17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90-176	강유정					변경없음	1공구
24	산곡동	93-15	도	362	192	24	93-15	도	362	192	부평구	징					변경없음	1공구
25	산곡동	10-32	노	16,999	3,705	25	10-32	니	16,999	3,705	인천광역시	징					변경없음	1공구
		28필지			13,850.8		28필지			13,850.8								

인천광역시-부평구1/1

												0 =1								
일련 번호	٨٦١٦١	기 정				일련 번호	변 경				소	유자		관 계	인		토피 심도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HIZILO	비고
변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변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	종류	주 소	성명	(m)	평균애무면 기문 ()~()m 까지	변경사유	미끄
1	청천동	112	도	82,245.9	832	1	112	버	82,245.9	832	공	인천광역시					16.188	-18.19~5.53	변경없음	1공구
2	청천동	139	구	7,841.4	1,349	2	139	구	7,841.4	1,349	공	인천광역시					15.743	-18.19~5.25	변경없음	1공구
3	청천동	111	도	62,316.6	118	3	111	도	62,316.6	118	공	인천광역시					13.159	-15.54~5.66	변경없음	1공구
4	청천동	331-3	도	2,833	1,196	4	331-3	도	2,833	1,196	공	인천광역시					13.756	-15.20~7.70	변경없음	1공구
1	산곡동	119-81	도	140	25	1	119-81	도	140	25	국토교통부	국					12.620	-12.86~7.75	변경없음	1공구
2	산곡동	387-19	도	150	33	2	387-19	도	150	33	국토교통부	국					12.620	-12.83~7.80	변경없음	1공구
3	산곡동	116-9	도	770	397	3	116-9	도	770	397	기획재정부	국					11.945	-10.86~10.34	변경없음	1공구
4	산곡동	100-38	도	11,283	3,274	4	100-38	H	11,283	3,274	인천광역시	공					11.567	-12.77~13.43	변경없음	1공구
5	산곡동	10-32	도	16,999	3,951	5	10-32	도	16,999	3,951	공	인천광역시					18.920	-8.12~14.35	변경없음	1공구
6	산곡동	산133-8	도	21,961	3,706	6	산133-8	버	21,961	3,706	인천광역시	공					36.960	-14.49~11.62	변경없음	1공구
7	산곡동	80-1	도	1,210	439	7	80-1	버	1,210	439	공	인천광역시					32.746	-10.51~10.11	변경없음	1공구
8	산곡동	산133-9	도	2,774	848	8	산133-9	버	2,774	848	인천광역시	공					36.960	-12.66~9.02	변경없음	1공구
9	산곡동	산133-10	임	31,814	97	9	산133-10	ᅙ	31,814	97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제분㈜					38.140	-12.17~8.31	변경없음	1공구
10	산곡동	179-140	수	27,023	65	10	179-140	수	27,023	65	인천광역시	공					41.205	-14.72~5.17	변경없음	1공구
11	산곡동	산133-4	도	4,029	150	11	산133-4	도	4,029	150	인천광역시	공					41.800	-13.09~7.18	변경없음	1공구
		15필지			16,480		15필지			16,480										

편입용지 세목조서(일시)-1공구

인천광역시-부평구1/3

																		!8 = N = +	0 1 1/0
이려		기 정				이려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	종류	주 소	성명	사용기간	변경사유	비고
1	청천동	199-41	도	4,773.6	55.3	1	199-41	도	4,773.6	55.3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39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2	청천동	112	h	82,245.9	793	2	112	도	82,245.9	793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39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3	청천동	139	구	7,841.4	8	3	139	구	7,841.4	8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39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	산곡동	100-38	도	11,283	79	1	100-38	도	11,283	79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39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2	산곡동	97-1	도	3,975	81	2	97-1	도	3,975	81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4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6-11	신상용	3 분의1						
3	산곡동	99-20	잡	19	3	3	99-20	잡	19	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6-11	신영희	3 분의1				사용일로부터 41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6-11	신동숙	3 분의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6-11	신상용	3 분의1						
4	산곡동	99-37	잡	1	1	4	99-37	잡	1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6-11	신영희	3 분의 1				사용일로부터 41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6-11	신동숙	3 분의1						
5	산곡동	99-3	대	104	8	5	99-3	대	104	8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6-11	김애자					사용일로부터 41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6	산곡동	99-34	끕	1	1	6	99-34	대	1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6-11	김애자					사용일로부터 41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93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 은행	사용일로부터	사용기가	
7	산곡동	99-15	대	938	14	7	99-15	대	938	14	,501동2202호(경서동,청라 에스케이뷰)	박현양		전세 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성수동2기)	㈜이마 트	4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8	산곡동	99-8	도	231	17	8	99-8	도	231	17	기획재정부	국					사용일로부터 4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9	산곡동	406	도	54	3	9	406	도	54	3	국토교통부	국					사용일로부터 4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0	산곡동	406-7	도	61	20	10	406-7	도	61	20	국토교통부	국					사용일로부터 4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편입용지 세목조서(일시)-1공구

인천광역시-부평구2/3

이려		기 정				이려	변 경				소 유	자		관계인	인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	종류	주 소	성명	사용기간	변경사유	비고
11	산곡동	96-32	대	1	1	11	96-32	대	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사용일로부터 2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2	산곡동	96-16	대	225	13	12	96-16	대	225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사용일로부터 2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3	산곡동	91-57	대	239	8	13	91-57	대	239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사용일로부터 2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4	산곡동	91-69	대	490	23	14	91-69	대	490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사용일로부터 2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5	산곡동	96-26	대	10	3	15	96-26	대	10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사용일로부터 2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6	산곡동	96-36	대	5	3	16	96-36	대	5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에이엠플러스 피에프브이 산곡(주)					사용일로부터 2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7	산곡동	96-2	도	1,116	74	17	96-2	도	1,116	74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46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8	산곡동	96-1	대	108	13	18	96-1	대	108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강남매트로빌딩 8~9층	㈜생보부 동산신탁					사용일로부터 41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19	산곡동	95-19	대	47	9	19	95-19	대	47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강남매트로빌딩 8~9층	㈜생보부 동산신탁					사용일로부터 40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20	산곡동	7-21	도	6,992	175	20	7-21	도	6,992	175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38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21	산곡동	10-159	도	44	3	21	10-159	도	44	3	기획재정부	국					사용일로부터 38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2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 마트			
22		22.2		1 104	24	22	93-3	E!!	1161	20	안담토206년월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임미희	2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기) (산곡동지점)	㈜하나은행	사용익로부터	사용기간 변경	433
22	산곡동	93-3	대	1,104	34	22	(93-9번지 병합)	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고병묵	2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한국외한 은행	사용일로부터 38개월	지번병합	1공구	
						406동 17013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u> </u>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 마트							

편입용지 세목조서(일시)-1공구

인천광역시-부평구3/3

		I																	0 1 0/0
익려		기 정				익려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	종류	주 소	성명	사용기간	변경사유	비고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한국외 한은행			
23	산곡동	10-158	대	17	3	23	10-158	대	17	3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고병묵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하이 마트	사용일로부터 38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왕(원(왕(로))) (산곡동지점)	㈜하나은 행			
											인천광역시 부평구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9번지 하이마트 빌딩 5~8F	㈜하이 마트	110017451	110 7171	
24	산곡동	11-7	대	90	11	24	11-7	대	90	11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임미희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한국외 한은행	사용일로부터 38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산곡동지점)	㈜하나은 행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임미희	2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9번지 하이마트 빌딩 5~8F	㈜하이 마트			
25	산곡동	93-9	대	57	4						인천광역시 부평구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한국외 한은행	-	93-3으로 병합	1공구
											안남로206번길 18 406동 1701호 (산곡동, 경남아파트)	고병묵	2 분의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9번지 하이마트 빌딩 5~8F	㈜하이 마트			
26	산곡동	93-15	도	362	28	25	93-15	도	362	28	부평구	공					사용일로부터 39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27	산곡동	10-32	도	16,999	210	26	10-32	도	16,999	210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39개월	사용기간 변경	1공구
28	산곡동	91-29	대	67	1	27	91-29	대	67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1-62 한빛아트빌 401-301	최승규					사용일로부터 17개월	변경없음	1공구
29	산곡동	95-8	답	75	1	28	95-8	습	75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123-57 태산아 파트 102동2204호	박원서					사용일로부터 17개월	변경없음	1공구
		32필지			1,700.3		31필지			1,700.3									

편입용지 세목조서(취득)-2공구

			기	정				변	경		소 유 지	-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 면 (m²)	주 소	성 명	지분율	종류	주 소	성명	변경사유	비고
1	산곡동	179-140	수	27,023	592	1	179-140	수	27,023	592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2	산곡동	산133-8	도	21,961	21	2	산133-8	도	21,961	21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인천광역시-서구1/1

0.171			기	정		0171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율	종류	주 소	성명	변경사유	비고
1	석남동	600	도	78,012.5	313.3	1	600	도	78,012.5	313.3	서구청	공					변경없음	2공구
2	석남동	550	도	243.1	101.2	2	550	도	243.1	101.2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3	석남동	544-40	도	136.1	22.1	3	544-40	도	136.1	22.1	서구청	공					변경없음	2공구
4	석남동	544-5	도	88.9	10.6	4	544-5	도	88.9	10.6	서구청	공					변경없음	2공구
5	석남동	544-43	도	60.8	43	5	544-43	도	60.8	43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6	석남동	544-37	도	73.0	51.4	6	544-37	도	73.0	51.4	서구청	공					변경없음	2공구
7	석남동	544-36	도	122.4	85	7	544-36	도	122.4	85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8	석남동	544-42	도	77.6	52.6	8	544-42	도	77.6	52.6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9	석남동	634	도	4,162.1	88.3	9	634	도	4,162.1	88.3	서구청	공					변경없음	2공구
10	석남동	494-8	도	254.4	143.7	10	494-8	도	254.4	143.7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11	석남동	495-7	도	127.6	104.4	11	495-7	도	127.6	104.4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12	석남동	495-6	토	123.1	71.8	12	495-6	도	123.1	71.8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13	석남동	609	도	37,139	1,939.1	13	609	도	37,139	1,939.1	서구청	공					변경없음	2공구
14	석남동	503-9	도	485.7	314.4	14	503-9	도	485.7	314.4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15	석남동	532-11	도	471.3	94.4	15	532-11	도	471.3	94.4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16	석남동	519-14	도	582.5	29.6	16	519-14	도	582.5	29.6	인천광역시	공					변경없음	2공구
		18필지			4,077.9		18필지			4,077.9								
									•						•			

인천광역시-부평구1/1

																		인친	过광역시-부	-평구1/1
일련 번호	소재지		기	정		일련 번호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토피 심도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변경사유	비고
번호	조세시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율	종류	주 소	성명	(m)	8판애무단 기준 ()~()m 까지	현장시뉴	미끄
1	산곡동	179 -140	수	27,023	13	1	179 -140	수	27,023	13	인천광역시	공					136.12	-14.72m ~ 5.17m	변경없음	2공구
2	산곡동	산141-9	임	22	10	2	산141-9	임	22	10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48 372동2504호(경서동 청라한화꿈에그라)	김덕영					133.26	-14.72m ~ 5.17m	변경없음	2공구
3	산곡동	산141-8	도	226	87	3	산141-8	도	226	87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09동 903호	김덕영					129.54	-14.72m ~ 5.17m	변경없음	2공구
4	산곡동	산133-8	도	21,961	702	4	산133-8	도	21,961	702	인천광역시	공					54.86	-14.49m ~ 11.62m	변경없음	2공구
5	산곡동	산133 -14	도	159	62	5	산133 -14	도	159	6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제분 (주)					125.22	-14.66m ~ 5.21m	변경없음	2공구
6	산곡동	산141-6	임	4,748	2,061	6	산141-6	미	4,748	2,061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48 372동2504호(경서동 청라한화꿈에그린)	김덕영					128.97	-17.23m ~ 4.84m	변경없음	2공구
7	산곡동	산141-1	임	15,684	162	7	산141-1	임	15,684	162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48 372동2504회경사동 청라한화꿈에그린)	김덕영					202.02	-17.26m ~ 3.63m	변경없음	2공구
8	산곡동	산98-28	임	6,075	218	8	산98-28	임	6,075	218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제분 ㈜					247.67	-19.04m ~ 2.50m	변경없음	2공구
9	산곡동	산98-27	임	6,273	1,474	9	산98-27	<u>10</u>	6,273	1,47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제분 ㈜					255.54	-19.03m ~ 2.65m	변경없음	2공구

인천광역시-서구1/3

																			<u> 1천광역시</u>	-서구1/3
익려	. ====		기	정		익려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토핀	구 <u>분지상권설정범</u> 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율	종류	주 소	성명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변경사유	비고
1	석남동	산9	임	30,864	189	1	산9	임	30,864	189	산림청	국					193.60	-22.75m ~ 0.70m	변경없음	2공구
2	석남동	산9-1	임	9,500	3,075	2	산9-1	임	9,500	3,075	산림청	국					143.24	-22.72m ~ 0.70m	변경없음	2공구
3	석남동	산151-7	임	238	167	3	산151-7	임	238	167	기획재정부	국					139.42	-22.92m ~ 2.70m	변경없음	2공구
4	석남동	산11-1	임	5,612	1,167	4	산11-1	임	5,612	1,167	산림청	국					145.78	-24.14m ~ -2.86m	변경없음	2공구
5	석남동	산11-2	임	1,524	92	5	산11-2	임	1,524	92	산림청	국					145.21	-24.13m ~ -3.21m	변경없음	2공구
6	석남동	산12	임	12,431	661	6	산12	임	12,431	66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0	학교법인 신호학원					168.54	-26.45m ~ -4.39m	변경없음	2공구
7	석남동	산12-1	임	7,045	1,432	7	산12-1	임	7,045	1,43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0	학교법인 신호학원					168.85	-26.47m ~ -4.41m	변경없음	2공구
8	석남동	산57-7	임	64	64	8	산57-7	임	64	6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0	학교법인 신호학원					167.45	-26.70m ~ -6.73m	변경없음	2공구
9	석남동	산57	임	22,284	99	9	산57	임	22,284	9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0	학교법인 신호학원		압류	서구청	공	167.36	-26.87m ~ -6.75m	변경없음	2공구
10	석남동	산49-10	임	176	89	10	산49-10	임	176	8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0	학교법인 신호학원					168.42	-27.11m ~ -6.98m	변경없음	2공구
11	석남동	산49-11	임	2,447	311	11	산49-11	임	2,447	31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0	학교법인 신호학원					168.12	-27.09m ~ -6.72m	변경없음	2공구
12	석남동	산49-1	도	11,263	478	12	산49-1	도	11,263	478	인천광역시	공					94.02	-28.88m ~ -7.37m	변경없음	2공구
13	석남동	산48-63	도	13,502	3,107	13	산48-63	도	13,502	3,107	인천광역시	공					92.85	-30.27m ~ -7.40m	변경없음	2공구
14	석남동	산50-7	도	1,180	126	14	산50-7	도	1,180	126	서구청	공					93.21	-30.30m ~ -10.22m	변경없음	2공구

인천광역시-서구2/3

											T							긴	전광역시-	·시구2/3
일련 번호	소재지		기	정		일련 번호		변	. 경		소 수	유 자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교고체스업 정범위	변경사유	비고
편호	소재시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변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율	종류	주 소	성명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건경자규	미北
15	석남동	638-1	도	12,217.1	79	15	638-1	도	12,217.1	79	인천광역시	공					93.62	-30.32m ~ -10.25m	변경없음	2공구
16	석남동	638	도	10,303.3	89	16	638	ᅜ	10,303.3	89	서구청	공					93.42	-30.35m ~ -10.27m	변경없음	2공구
17	석남동	600	도	78,012.5	1,752.2	17	600	녀	78,012.5	1,752.2	서구청	공					20.95	-30.96m ~ 9.62m	변경없음	2공구
18	석남동	550	도	243.1	34	18	550	ᅜ	243.1	34	인천광역시	공					11.75	-32.29m ~ -2.68m	변경없음	2공구
19	석남동	545-26	도	92.4	33	19	545-26	ᅜ	92.4	33	인천광역시	공					153.12	-32.57m ~ -2.57m	변경없음	2공구
20	석남동	545-30	대	269.3	95.6	20	545-30	대	269.3	95.6	인천광역시	공						-32.73m ~ -2.57m	변경없음	2공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31/3),	임백종	3309분 의 75.082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강남구반포동 1031 반포아파트 22동 310호	김연 호				
21	석남동	545-29	도	95.0	28.3	21	545-29	도	95.0	28.3	삼산주공아파트 105-1109		75.082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114-1	한우동	51.36	-32.73m ~ -2.73m	변경없음	2공구
											인천광역시	공								
22	석남동	620	도	8,344.2	31	22	620	도	8,344.2	31	서구청	공					50.02	-32.62m ~ -2.74m	변경없음	2공구
23	석남동	544-40	도	136.1	32.2	23	544-40	ᅜ	136.1	32.2	서구청	공					10.92	-32.68m ~ -3.13m	변경없음	2공구
24	석남동	634	도	4,162.1	2,003	24	634	도	4,162.1	2,003	서구청	공					12.12	-30.84m ~ -10.3m	변경없음	2공구

인천광역시-서구3/3

																		인	선광역시-	ハナンノン
익려			7	정		익려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토피 심도	구분지상권설정 <u>범</u> 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 율	종류	주 소	성명	심노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변경사유	비고
25	석남동	495-7	도	127.6	23.2	25	495-7	도	127.6	23.2	인천광역시	공					5.85	-32.22m ~ -2.67m	변경없음	2공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14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원진	2분 의 1							
26	석남동	495-19	대	382.4	295.5	26	495-19	대	382.4	295.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219, 303동 304호(상현동, 서원마을3단지아이파크)	차유나	2분 의 1	근저 당권	서울특별 시 중구 다동 39	㈜카씨 국민행	40.12	-25.10m ~ 7.46m	변경없음	2공구
27	석남동	495-6	도	123.1	36	27	495-6	도	123.1	36	인천광역시	공					3.69	-32.22m ~ -2.67m	변경없음	2공구
28	석남동	495-12	대	660.1	227.9	28	495-12	대	660.1	227.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2-2	기독교 기독한성 1 교회 선 1 교회 2 교회		근저 당권	서울특별 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우 리은 행	52.48	-26.00m ~ -2.67m	변경없음	2공구
29	석남동	612	도	10,969.4	30	29	612	도	10,969.4	30	서구청	공					50.42	-32.62m ~ -3.07m	변경없음	2공구
30	석남동	502-16	도	98.6	41.9	30	502-16	도	98.6	41.9	인천광역시	공					52.69	-32.58m ~ -2.57m	변경없음	2공구
31	석남동	502-17	도	91.1	38.9	31	502-17	도	91.1	38.9	인천광역시	공					51.19	-32.63m ~ -2.63m	변경없음	2공구
32	석남동	502-15	도	263.3	107.8	32	502-15	도	263.3	107.8	인천광역시	공					49.26	-32.61m ~ -3.12m	변경없음	2공구
33	석남동	609	도	37,139	8,613	33	609	도	37,139	8,613	서구청	공					45.75	-30.50m ~ -11.6m	변경없음	2공구
34	석남동	503-9	도	485.7	39.8	34	503-9	도	485.7	39.8	인천광역시	공					10.12	-32.67m ~ -3.07m	변경없음	2공구
		43필지	[29,477.3		43필지			29,477.3										

편입용지 세목조서(일시)-2공구

인천광역시-부평구1/1

이려	일련 번호 소재지		기	정		이려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0 111	
턴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율	종류	주 소	성명	사용기간	변경사유	비고
1	산곡동	179-140	수	27,023	82	1	179-140	수	27,023	82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2	산곡동	산141-4	임	110	1	2	산141-4	임	110	1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48 372동2504호(경사동, 청라현화꿈에그린)	김덕영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3	산곡동	산133-8	도	21,961	7	3	산133-8	도	21,961	7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인천광역시-서구1/2

이러			기	정		0134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율	종류	주 소	성명	사용기간	변경사유	비고
1	석남동	600	도	78,012.5	189.9	1	600	도	78,012.5	189.9	서구청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2	석남동	550-33	대	202.6	12	2	550-33	대	202.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3-1 대방아파트 3동 354호	김홍근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한빛 은행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3	석남동	550	토	243.1	19.9	3	550	도	243.1	19.9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4	석남동	544-40	도	136.1	9	4	544-40	도	136.1	9	서구청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5	석남동	544-5	노	88.9	3	5	544-5	도	88.9	3	서구청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6	석남동	544-43	도	60.8	12.1	6	544-43	도	60.8	12.1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7	석남동	544-37	도	73.0	14.8	7	544-37	도	73.0	14.8	서구청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8	석남동	544-36	도	122.4	24.6	8	544-36	도	122.4	24.6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9	석남동	544	대	561.7	1.6	9	544	대	561.7	1.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7-23	대한예수 교장로회 선두교회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편입용지 세목조서(일시)-2공구

인천광역시-서구2/2

																	Ç	인천광역시	-서구2/2
이런			기	정		이런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주 소	성 명	지분율	종류	주 소	성명	사용기간	변경사유	비고
10	석남동	544-42	도	77.6	16.6	10	544-42	도	77.6	16.6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11	석남동	634	도	4,162.1	46	11	634	도	4,162.1	46	서구청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12	석남동	494-8	도	254.4	47.2	12	494-8	도	254.4	47.2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14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원진	2분의 1				사용일로부터	11.07171	
13	석남동	495-19	대	382.4	1.1	13	495-19	대	382.4	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219, 303동 304호(상현동, 서원마을3단지아이파크)	차유나	2분의 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한국 씨티은 행	사용일도구더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14	석남동	609	도	37,139	83.9	14	609	도	37,139	83.9	서구청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15	석남동	503-9	도	485.7	57.7	15	503-9	도	485.7	57.7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한국 씨티은 행			
16	석남동	503-7	대	637.8	17.3	16	503-7	대	637.8	17.3	503-4,503-5,50 3-6 제2호	㈜비아 리코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 로9길 20 (태평로2가) (남대문지점)	㈜신한 은행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17	석남동	503-8	대	594.4	7.9	17	503-8	대	594.4	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5-401	김형찬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75 (문래동6가)	㈜지에 스리테 일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18	석남동	532-11	도	471.3	22.7	18	532-11	도	471.3	22.7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19	석남동	527-30	도	998.9	12.6	19	527-30	토	998.9	12.6	서구청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20	석남동	519-14	도	582.5	17.4	20	519-14	도	582.5	17.4	인천광역시	공					사용일로부터 68개월	사용기간 변경	2공구
		23필지	1		707.3		23필지	I		707.3									

[물건조서](변경없음)

							·	경				
일련 번호	소 7	재 지	지 번	7 8	물건의	7 7 11 7 74	OL+L(CTA)	비 차	저촉		소 유 자	비고
				구 분	종류	구조 및 규격	위치(STA)	방 향	연면적	성 명	주 소	
				공작물	대문 (철문+문주)	철재 (2.0m×1.8m), 블록조	STA.59km900.00	좌	1식 (3.0m)	신상석	인천 부평구 산곡동185-17 한양8차701호	1공구
				공작물	계단	콘크리트조	STA.59km900.00	좌	1식	신상석	인천 부평구 산곡동185-17 한양8차701호	1공구
				공작물	바닥 미장	슬라브	STA.59km900.00	좌	30.7m²	신상석	인천 부평구 산곡동185-17 한양8차701호	1공구
1	부평구	산곡동	99-20	공작물	가추	앵글/판넬	STA.59km900.00	좌	5.5m²	허금애	인천 부평구 산곡동 99-20	1공구
				공작물	가추	목조	STA.59km900.00	좌	14.0m²	허금애	인천 부평구 산곡동 99-20	1공구
				공작물	차양	철재, 천막지 (7.1×2.0)	STA.59km900.00	좌	14.2m²	최상철	인천 부평구 산곡동 99-20	1공구
				영업권	휴업	수산물 소매업 (대풍수산)	STA.59km900.00	좌	1식	허금애	인천 부평구 산곡동99-20	1공구
2	부평구	산곡동	99-3	건물	가옥	블록조/슬래브	STA.59km910.00	좌	33.7m²	김애자	인천 부평구 산곡동 96-11	1공구
3	부평구	산곡동	99-3	건물	가옥	블록조/슬래브	STA.59km910.00	좌	29.8m²	김애자	인천 부평구 산곡동 96-11	1공구
<i></i>	TOI	270	99-3	공작물	휀스	블럭조	STA.59km910.00	좌	14.0m	김애자	인천 부평구 산곡동 96-11	1공구
4	부평구	산곡동	91-69	공작물	대문	칼라아연도강판 H=5.0m	STA.60km000.00	좌	1식	㈜생보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공구
•	761	270	91-69	공작물	휀스	칼라아연도강판 H=5.0m	STA.60km000.00	좌	86.0m	신탁	299 강남메트로빌딩 8~9층	101
5	부평구	산곡동	95-25	공작물	휀스	목재 H=1.0m	STA.59km980.00	우	26.0m	강유정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0-176	1공구
3	干買干	신국공	93-23	농작물	영농 손실	농작물	STA.59km980.00	우	1식 70.5㎡	강유정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0-176	1공구
				공작물	경사로	철재/목재 (1.5×3.7)	STA.59km910.00	좌	1개소 5.8㎡	국민은행	인천 부평구 산곡동 99-15	1공구
8	부평구	산곡동	99-15	공작물	경사로	철재/목재 (2.3×3.8)	STA.59km910.00	좌	1개소 8.7㎡	설화	인천 부평구 산곡동 99-15	1공구
				공작물	차양	철재, 천막지 (14.0×4.3)	STA.59km910.00	좌	1개소 60.2㎡	설화	인천 부평구 산곡동 99-15	1공구
9	서 구	석남동	544-36	공작물	가판대	우레탄판넬	STA.62km655.00	좌	5.0m²	이예순	인천시 서구 면개포로 28번길 14-4(석남동)	2공구
10	서 구	석남동	544	공작물	목조 테라스	목조	STA.62km603.00	좌	11.0m²	동대문곱창 (김현옥)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4	2공구
11	서 구	석남동	544	공작물	목조 테라스	목조	STA.62km608.00	좌	7.9m²	을지로골뱅이 (한인회)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4	2공구
12	서 구	석남동	544	공작물	목조 테라스	목조	STA.62km610.00	좌	15.0m²	소래포구 (김보생)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4	2공구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7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어반이엔씨 (주)	박형만	2019. 9. 4.	인천190016	510,000,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456번길 24, 609호 (십정동, 리버시티)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7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9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다원이앤지

2) 대 표 자 : 안흥만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A동 714호 (구월동, 구월테크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24호

6) 등 록 일 자 : 2019. 9.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7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9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1) 업 체 명: 에코에너지(주)
- 2) 대 표 자 : 송효순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백석동)
-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25호
- 6) 등 록 일 자 : 2019. 9.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80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구 분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양도· 양수일
양도인	정보통신공사업 (제320268호)	주식회사 에스제이씨앤씨 모상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15번길 3, (성곡동)	2019.
양 수 인	정보통신공사업	원창이앤씨 주식회사 한승희	인천광역시 운중로48번길 37(운남동)	9.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1581호

공인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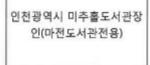
인 천 광 역 시 장

1. 등록사유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2. 최초사용연월일 : 2019. 9. 6.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고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84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폐업 사유
제 311017호	㈜와콘 정 지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6번길 15(논현동)	2019. 9. 5.	자진폐업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9-158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한반도건설(주)	2019. 9. 6.	인천 180014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39, 5층 502호(구월동, 대진빌딩)	전문인력 부족	

2019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590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제 320314호	㈜씨어스 김 애 옥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191, ㈜이노밴(도화동)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5일 (2019. 9. 9.~ 2019. 9.2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 - 29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09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09.09. ~ 2019.09.23(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19년 11월 30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19년 11월 22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3)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 한위 반과태 료부과공시송달대상

2019. 9. 9.(월요일)

연번	과태료 대장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697	최**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주안로 27 **** (도화동, 동원아파트)	좌 동	2018.08.31. 09:38	서구 원창동 북항로	폭0.28미터 초과(폭2.78미터)	서울90 바****	300,000	반송(주소불명)	
2	000023	0 **	인천광역시서구 옻우물로26번길 **** (석남동, 덕성빌라)	u	2019.01.10. 14:56.	서구 오류동 검단로	축하중1.60톤 초과(4축하중11.60톤)	인천06 사****	500,000	반송(폐문부재)	
3	000026	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주화로 **** (대화동)		2019.01.10. 09:56.	계양구 작전동 아나지로	축하중1.80톤 초과(4축하중11.80톤)	경기06 사****	500,000	반송(수취인불명)	
4	000032	신**	인천광역시서구 완정로178번길 **** (마전동, 목화아파트)		2019.01.11. 13:40.	강화군 길상면 해안동로	축하중1.80톤 초과(3축하중11.80톤)	경기06 로****	500,000	반송(폐문부재)	
5	000033	김**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장로 180번길**** (산곡동, 대명그린빌)		2019.01.11. 15:00.	강화군 길상면 해안동로	축하중1.40톤 초과(3축하중11.40톤)	인천06 사****	500,000	반송(폐문부재)	
6	000040	박**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건삼전1길 ****		2019.01.15. 10:22.	서구 원창동 중봉대로	길이2.59미터 초과(길이19.29미터)	충남94 사****	300,000	반송(이사감)	
7	000067	신**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낙섬서로10번길 **** (용현동)		2019.01.22. 08:40.	중구 신흥동 서해대로	높이0.22미터 초과(높이4.22미터)	인천99 아****	300,000	반송(폐문부재)	
8	080000	김**	부산광역시북구 낙동대로 **** (구포동)		2019.01.29. 14:48.	중구 항동 인중로 (항동과적검문소)	축하중 1.17톤 초과(3축하중11.17톤)	경기91 바****	500,000	반송(폐문부재)	
9	000166	심**	충청북도제천시 의림대로30안길 **** (청전동)		2019.03.07. 15:45.	중구 항동 인중로 항동과적검문소	축하중1.08톤 초과(1축하중11.08톤)	충북06 노****	500,000	반송(폐문부재)	
10	000335	박**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건삼전1길 ****		2019.04.18. 13:19.	서구 가정동 봉오대로	길이2.70미터 초과(길이19.40미터)	충남94 사****	300,000	반송(폐문부재)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259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고 기간 : 2019년 9월 9일 ~ 2019년 9월 23일(14일)

■ 의견 준비기간 : 2019년 9월 24일 ~ 2019년 10월 2일(10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부정당업자의	l 입찰 참가자격 제	한			
2. 당사자	성 명(명칭)	김대곤				
2. 8/1/4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	구 상화로 3	371, 106/806		
3.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교의 「불용물품 [약을 체결한 후, (련하여 정당	상한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일 입찰참가자격 제형	한(1개월 이	상 2년 이내)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난체를 당사자로 하는 행규칙 제76조 제1힝		법률 시행령 기	데92조제2항	데2호가목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재정과	담당자	장은영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정각로 9 (구	월동 1137)	전화번호	032-420- 6580
6. 청문실시	일 시	2019. 10. 11.(금)	11:00			
	장 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교	육재정과 앞	112호 예결	산협의실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교육재	정과 경리팀정	당, 재산관리	기팀장
	구세시	성 명		원 숙 연,	이 정 효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032-420-6580, 장은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	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어 성명	니다.						
의견제출인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十五·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ا جا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					· 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접	수번호	과징금 부과 신청서				
	약 명 찰 명)					
λÌ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신 *	청 사유					
위와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신청합니다.						
2019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첨	첨부서류 과징금을 신청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규

인천광역시예규(발령)

- □ 제 명: 인천광역시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 □ 제안이유

성희롱예방 지침의 근거법령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2015.7.1.시행)되고, 성폭력예방을 위한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예방조치 등 관련 조문 신설의 개정(2016.11.30.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희롱예방 근거 법령 제명변경에 따른 제명변경, 인용조문, 성폭력예방 근거 법령 추가 및 성희롱·성폭력 등 용어 정비 (제명, 제1조, 제2조)
- 나. "성희롱"을 "성희롱·성폭력"으로, 고충상담창구 운영기관·고충상담원 지정 대상 확대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다.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 운영 근거 마련(제6조)
- 라.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한 규정 마련,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제10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고인과 특정위원 간 회피 및 기피 근거 마련(제13조)

인천광역시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19년 9월 9일

인천광역시예규 제468호

인천광역시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

- 다) 본청·시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직원(인천광역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 치·운영
 -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4.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5.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6.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8.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예방업무 담당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다만, 인천광역시소방본부·소방학교를 포함한 소방서(이하 '소방본부 및소속기관'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라 한다)는 성희롱예방업무 담당부서에 자체 고충상담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 ② 시장·소방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상수도본부장(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감사·여성·복무·인사부서 담당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 임직원, 외부전문가(성희롱·성폭력·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장등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하여야 한다.
-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이버신고센터)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시의회사무처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 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강사에 의한 교육, 시청각 교육, 사이 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 6.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7.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8.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 하여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등)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 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 1. 신청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청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4. 신청이 제기될 당시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5. 고충상담창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 ④ 고충상담창구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이송받은 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고충상담창구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조사 과정에서 시,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상수도본부의 고충상 담창구 운영 부서의 장(이하 '고충상담창구 운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⑦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고충상담창구 운영 부서의 장은 성희롱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등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 ② 시장등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 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③ 시장등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 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고충상담창구 운영부서의 장은 성희 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고충상 담운영창구 운영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는 소방감사담당관이, 그 소속기관과 상수도본부는 기관의 장의 다음 직제순위자로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 인사담당 부서의 장, 성희롱 예방교육담당 부서의 장, 성희롱 · 성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상수도본부는 자체 고충심사위원회의위원, 성희롱 · 성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3. 그 밖에 성희롱 · 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등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 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징계) ① 시장등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 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시장등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접수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확인	
번호	일자	성명	소속부서	20110	게더끈게	일자	상담원	○○장

[별지 제2호서식]

		조 사 신	청 서				
접수번호(접수일)	(20)	담당지	}		(서)	명)
	신청인	성명 (성별) 연락처 (e-mail)	()		소속 직급		
당사자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연락처 (e-mail)	())	소속 직급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연락처 (e-mail)	())	소속 직급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 기록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	, 지속성의 여부	·, 목격자 혹·	은 증인의 유	무두호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 3. 정계 등 인사조)
C T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		또는 인)		
						00000	귀하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0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19년 9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근거하에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

- "2019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으로 변경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산업진홍과,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8층(1809호) 전화 : 032-440-4253, 팩스 : 032-440-86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규정 제정안(항목별)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2015-05-26조례 제5508〉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부칙〈2015 - 05 - 26조례 제5508호〉	부칙〈2015 - 05 - 26조례 제5508호〉
제1조(생 략)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생 략)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 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관계법령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 · 폐지에 관한 사 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관련 법규 "해당사항 없음" 정비대상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 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 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 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1호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물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제1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개별화물자동차"에서 "개인화물자동 차"로 변경
-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확대(안 제2조 제2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 범위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택시화물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032-440-3832, 팩스: 032-440-8669, 전자메일: lhs886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별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총중량 3.5톤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 행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치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치 운송사업자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u>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 1]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20대 이상	○ 1대
대수		
사무실 및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영업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 한 면적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u> </u>
의 종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 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 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 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2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환경과 현장의 법·제도 간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 인천 광역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안 제2조)
-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간사, 수당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서식 : 실·국별 의견수렴서(별첨)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
 -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두다.
 -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워 선발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3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6.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서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맞춰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안 제7조)
 - 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추가)
 - 도시계획과장 → 도시균형계획과장(변경)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원녹지과장(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IDC 101호(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2) 연락처 : (전화) 032-440-4542, FAX) 032-440-8682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훈령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1항중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화담당 관"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균형계획과장"으로 하며, "공원 녹지과장"을 "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토지정보과장, 정보화담당관,	<u>정보화담당관</u>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버스정책	
과장, 도로과장, <u>도시계획과장</u> ,	도시균형계획과장,
하수과장, <u>공원녹지과장</u> , 경제자유	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구역청 도시건축과장 및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장으로 구성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64호

「인천광역시 혁신육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9. 9.

인 천 광 역 시 장

가칭)인천광역시 혁신육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친출산 환경조성과 부모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공동돌봄을 활성화 하고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칭)혁신육아카페의 정의-----(안 제2조)

※ 조례 제명 및 시설 명칭은 공모 및 심사선정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나. 설치 및 운영·관리-----(안 제3조)
- 다. 설치기준----- (안 제4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따름
- 라. 시설 기능 및 설치 · 운영계획의 수립---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마. 인천광역시 공동돌봄 · 공동육아 정책 위원회--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 바. 세부 운영기준 설정-----(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개관 및 휴관일, 운영시간, 이용료의 징수, 이용·입장·행위의 제한 등
- 사. 보험의 가입 -----(안 제14조)
- 아. 권한의 위임 및 지도・감독 -----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 군수·구청장에게 설치·운영 등 권한 위임
 - 시장은 시설에 대하여 지도 : 감독 실시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육아지원과, 전화: 032-440-2958, 팩스: 032-440-8712, 이메일: ljy0721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나. 실국별 의견수렴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가칭)인천광역시 혁신육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공동육아·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혁신육아카페(이하 "시설"이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아파트 단지 내 등 집 가까운 곳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관리) 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③ 시장은 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① 시설의 설치기준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 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따른다.
 -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부모 및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 2.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
 - 4.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 5.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 제6조(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 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이하 "계 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2.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5. 그 밖에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기능) ①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돌봄·공동육아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 2. 시설의 설치 ·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동돌봄·공동육아 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 육아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공동육아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 2. 관계 공무원
 - 3. 부모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 관련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 제9조(개관 및 휴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
 -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제10조(운영시간 등)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 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방법,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 4. 그 밖의 시설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3. 고성 · 난무 ·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의 설치·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 징수기준

구 분	요 일	이용료	내역
٥١٥١١	평일	1,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시설이용	토요일 일요일	1,000원	· 기본시간 이후 10분 초과 시마다 500원 할증
프로그램 참여	-	2,000원	· 1회차(40분) 기준 · 개인별 재료비 별도

비고: 타 시·도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를 징수 함.

「붙임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 당 없 음 "
특이사항	" 해 당 없 음 "